

가 10-13-6

가

가

윤광진 · 이순태 · 조용준 · 조영기  
한규설 · 이광남 · 박광호

가

가

Legislative Evaluation on the Whole  
Renewal Institution of Fisheries Licence

연구자 : 윤광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Yoon, Kwang-Jin

이순태(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Yi, Sun-Tae

조용준(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Cho, Yong-Jun

조영기(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Cho, Young-Ki

한규설(중앙수산조정위원회 위원)

Han, Kyoo-Sul

이광남(수산정책연구소장)

Lee, Kwang-Nam

박광호(수산정책연구소 연구위원)

Park, Kwang-Hoh

2010. 10. 31.



## I.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어업활동은 허가제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수산업법 제46조에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허가기간의 만료시 새로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업법 제48조에는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어업허가의 폐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해야 하고, 2년 이상 휴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1년 이상 휴업할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현실을 보면 면세유 공급, 어업보상, 감척사업 참여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조업을 하지 않으면서 어선만 보유하거나 신고없이 1년 이상 휴업 및 어업허가의 임대 등 어업허가의 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여부를 검토하였다.
  
-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를 도입하여 허가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불법어업 및 무조업 어선을 근절하는 데 기여하고, 수산자원의 적정관리와 어업질서의 유지 그리고 감척사업의 효과증대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제도도입의 취지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를 도입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적 고찰과 경제·사회적 효과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도하는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는 어업경영주(선주)의 잔존 허가기간에 관계없이 정부가 공고한 날(예, 2012년 12월 31일)에 허가기간을 종료하고, 새로운 5년의 어업허가를 허가절차와 기준에 따라 일제히 발급하여 다음 허가기간 종료일(예, 2017년 12월 31일)이 되도록 허가의 유효기간을 통일시키는 것을 말한다.

- 궁극적으로는 불법어업 및 무조업 어선에 대해서는 허가절차와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하여 어업허가의 신규진입과 퇴출을 연계함으로써 수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여부 및 향후 예상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일본사례를 통한 법적 고찰과 제도도입의 비용-효과 비교를 통한 타당성 분석 그리고 제도도입의 순응도 측정을 위한 설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허가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전자어업허가증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 II. 주요 내용

- 일본의 시즈오카현(靜岡縣) 사례분석을 통해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실시하여 불법어업의 예방, 무조업 어선의 감소, 감척사업의 실효성 증대, 수산자원의 회복 등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업허가 일제정비제

도의 도입시 예상되는 경제효과와 제도 순응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시나리오 1(어업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어업허가의 일제 정비제도를 실시하는 방안)과 시나리오 2(어업허가 유효기간을 보장하여 어업허가의 일제정비제도를 실시하는 방안)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의 비용을 추정한 결과 시나리오 1은 884억원, 시나리오 2는 119억원으로 나타나 현재는 시나리오 2이 타당성이 높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의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므로 분석 편의상 30년으로 설정하여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의 NPV(순현재가치)를 추정한 결과 제도 도입의 효과를 일반 가정시 시나리오 1의 NPV 1,655억원, 시나리오 2의 NPV 1,551억원으로 추정되어 시나리오 1이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그리고 최대 가정시 시나리오 1의 NPV 3,337억원, 시나리오 2의 NPV 2,658억원으로 추정되어 시나리오 1이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나리오 1이 시나리오 2에 비해서 시간이 소요될수록 타당성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 즉, 어업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 위의 경제분석 결과를 설문조사와 비교해보면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시기’에 대해 응답자들은 제도 도입은 약 1년후(2012년 1월부터) 또는 약 2년후(2013년 1월부터) 실시

되는 방안에 대해 어업허가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약 55.5% 이상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분석과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어업허가기간 5년에 대해 ‘적당하다’가 64.0%로 ‘개선이 필요하다’ 36.0%보다 나타나 현행 어업허가기간 5년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며, 업종별 실시에 대해 ‘찬성’ 83.5%이고, ‘반대’ 16.5%로 나타나 연안어업, 근해어업, 구획어업 등 업종별 실시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고 있음을 볼 때 제도 도입시 어업허가기간 5년과 업종별 실시에 필요가 크다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78.0%이고, ‘필요하지 않다’는 22.0%로 나타나 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제도 도입시 수용의사에 대해 ‘수용의사가 있다’는 의견이 76.5%, ‘수용의사 없다’는 23.5%로 나타나 제도 순응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이 경제 및 사회적 효용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한편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시 가장 큰 기대효과에 대해 응답자들은 ‘허가절차의 간소화’ 27.0%를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하고 있음을 볼 때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가 허가관리 내지 허가행정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현행 어업허가증은 지질 형태로 발급되어 훼손 및 분실, 위조 및 변조 등으로 허가관리의 효율성이 감소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허가관리의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소유하기 편리한 스마트 카드형태의 전자어업허가증의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 전자어업허가증 도입에 따른 정량적 효과 및 정성적 효과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으며,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전자어업허가증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였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사업의 내용연수는 인증단말기 및 서버를 기준으로 10년에 대해 분석을 하였으며 주요 기자재인 발급서버 및 발급기, 키발급 시스템은 각 도청에 1대, 농림수산식품부 2대로 총 11대를 가정하였고 사회적 할인율은 7.5%를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자어업허가증의 도입에 따른 경제성 분석의 결과를 보면 가정 1의 훼손율 90% 감소시 NPV가 24,030만원으로 0보다 높으며, IRR(내부수익률)도 10.7%로 일반적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아 타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 2의 훼손율이 80%가 감소하는 것을 가정하였을 경우 NPV가 7,973만원, IRR이 8.6%로 나타나 NPV가 0보다 높으며, IRR은 사회적 할인율 7.5% 크게 나타나 타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III. 기대효과

- 본 연구에서는 전자어업허가증 도입의 경제성 분석에서 포함되지 않은 어업허가증 위·변조 불법어업의 방지효과 및 지도·단속시 효율성 제고효과 그리고 정성적 효과인 통계

자료 확보 및 조업실태 등 D/B 구축 효과를 고려할 때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와 전자어업허가증의 도입은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단행하는 것이 경제적, 사회적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주제어 : 허가어업, 일제정비제도, 타당성 분석, 순현재가치, 전자어업허가증



---

---

## Abstract

---

---

### **I . Background and Purpose**

- The effect of adoption of a fishing license seems to be realized through a long period based 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expected economic effect and the compliance of the system.

### **II . Principal Content**

- The result of estimation of NPV(Net Present Value) of scenario 1(the reduction of the expiration date of fishing license) and scenario 2(the guarantee of the expiration date of fishing license) for 30 years for the convenience' sake shows that the NPV of scenario 1 is 165,500,000,000 won and the NPV of scenario 2 is 155,100,000,000 won. Thus the former is more feasible than the latter.
- And the maximum NPV of scenario 1 is 333,700,000,000 won and the maximum NPV of scenario 2 is 265,800,000,000 won. So as time goes by, the feasibility of scenario 1 is getting higher than that of scenario 2. More than 55.5% of the respondents agree that the appropriate time of introduction of ar-

renewal of fishing license is in 1 year or 2 years regardless of the remaining period, which shows the same result as the economic analysis.

- 78% of the respondents are in favor of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and 76.5% of them are ready to adopt the system, which shows the high intention of adoption of the system as well as the high approval of the system. Considering the result of economic analysis through the electronic fishing license, the NPV is 24,030,000 won, which is more than zero when the damage rate decreases. And the IRR is 10.7%, which shows higher feasibility than that of the social discount rate.

### **III. Expectant Effect**

- Putting the various analyses and reports together, the all-at-once adjustment of fishing license and the swift introduction of electronic fishing license is expected to increase not only economic effect but also social effect. And the appropriate time of introduction is “the sooner the better.”

➤ **Key Words : Licence Fishery, Whole Renewal Institution, Validity Analysis, Net Present Value, Certificate of Electronic Fisheries Licence**

# 목 차

요 약 문 .....	3
Abstract .....	9
I. 입법평가의 개요 .....	15
1. 입법평가의 필요성 .....	15
2. 입법평가의 범위 및 방법 .....	16
II. 수산업과 어업허가 .....	19
1. 수산업의 현황 .....	19
1) 생산량의 정체 .....	19
2) 어업인구의 감소 .....	20
3) 어업인구의 고령화 .....	21
2. 어업허가의 관리 .....	23
1) 불법어업 .....	23
2) 면세유의 불법유출 .....	27
3) 감척사업의 효율성 감소 .....	31
4) 임의 어선대체 .....	33
3. 어업허가의 일제정비제도 .....	34
III.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분석결과 .....	37
1. 법적 고찰 .....	37

1) 어업의 현황과 문제점 .....	37
2)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일본사례 .....	38
3)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기대효과 .....	43
2. 경제분석 .....	45
1) 분석개요 .....	45
2) 효과추정 .....	45
3) 비용추정 .....	52
4) 비용-효과 비교 .....	55
5) 타당성 분석 .....	56
3. 설문분석 .....	59
1) 조사개요 .....	59
2) 어업의 실태분석 .....	62
3)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순응도 .....	68
<b>IV. 전자어업허가증의 타당성 분석 .....</b>	<b>75</b>
1. 전자어업허가증의 필요성 .....	75
2. 현행 어업허가증의 실태 .....	76
3. 비용-효과 비교 .....	77
1) 효과항목의 선정 .....	77
2) 효과추정 .....	78
3) 비용추정 .....	82
4. 타당성 분석 .....	83
<b>V. 결 론 .....</b>	<b>85</b>

참 고 문 헌 ..... 89

**【부 록】**

<부록 1> 2003년(平成15년)도의 지사허가어업일제정비의  
허가 등에 관한 취급방침 ..... 93

<부록 2>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설문지 ..... 95

<부록 3> 제도도입의 순응비용 조사설계 ..... 103

<부록 4> 제도도입의 순응비용 설문지 ..... 105

<부록 5> 전자어업허가증의 조사설계 ..... 109

<부록 6> 전자어업허가증의 설문지 ..... 111

## I. 입법평가의 개요

### 1. 가

우리나라의 어업활동은 허가제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수산업법 제 46조에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허가기간의 만료시 새로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업법 제48조에는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어업허가의 폐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해야 하고, 2년 이상 휴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1년 이상 휴업할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현실을 보면 면세유 공급, 어업보상, 감척사업 참여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조업을 하지 않으면서 어선만 보유하거나 신고없이 1년 이상 휴업 및 어업허가의 임대 등 어업허가의 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여부를 검토하였다.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를 도입하여 허가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불법어업 및 무조업 어선을 근절하는 데 기여하고, 수산자원의 적정관리와 어업질서의 유지 그리고 감척사업의 효과증대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제도도입의 취지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적 고찰과 경제·사회적 효과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도하는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는 어업경영주(선주)의 잔존 허가기간에 관계없이 정부가 공고한 날(예, 2012년 12월 31일)에 허가기간을 종료하고, 새로운 5년의 어업허가를 허가절차와 기준에 따라 일제히 발급하여 다음 허가기간 종료일(예, 2017년 12월 31일)이 되도록 허가의 유효기간을 통일시키는 것을 말한다.

## I. 입법평가의 개요

궁극적으로는 불법어업 및 무조업 어선에 대해서는 허가절차와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하여 어업허가의 신규진입과 퇴출을 연계함으로써 수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여부 및 향후 예상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일본사례를 통한 법적 고찰과 제도도입의 비용-효과 비교를 통한 타당성 분석 그리고 제도도입의 순응도 측정을 위한 설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허가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전자어업허가증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 2. 가

수산업의 기반은 어선을 이용한 어획활동이라는 점에서 연안어업, 근해어업, 구획어업을 포함한 허가어업은 수산업의 가장 중요한 생산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산업법상 허가어업을 대상으로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제도도입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문헌연구 및 전문가회의를 통해 제도도입시 수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효과 항목을 도출하였고, 각 비용-효과항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정량적·정성적 효과를 추정하는 분석방법을 검토하였으며 설문분석을 위한 조사설계 및 설문항목에 대해 면밀하게 고찰하였다.

첫째, 제도도입의 비용-효과 비교를 통해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효과항목으로 유희어선의 방지효과, 어업질서의 유지효과, 허가제도의 효율화 효과를 선정하였다. 유희어선의 방지효과는 그 세부효과로서 면세유의 부정유출 방지효과, 감척사업의 효율성 제고효과, 어업보상액의 규모감소 효과 등이 포함된다. 어업질서의 유지효과는 불법어업의 감소 효과, 수산자원의 증대 효과가 포함된다. 허가제도의 효율성 효과는 간접적으로 발생되며 계량화를 하기 힘든 효과들로 정책수행의 효율화 효과, 정책집행의 비용감소효과, 신규어업의 진입해소 효과 등

이 포함된다. 효과의 경제적 가치 추정은 계량화가 가능한 효과와 계량화가 불가능한 효과를 구분하였으며 계량화가 가능한 효과에 대해서는 그 편익을 금액으로 산출하였다. 제도도입에 대한 발생비용은 크게 제도도입 순응비용 및 정책집행 비용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집행비용의 정확한 추정의 곤란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책집행의 효율성 증대효과와 상쇄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어업인 정책순응비용만을 고려하였다. 정책순응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CVM모형(Contingent Value on Method)을 이용하였고 제도의 도입시기 규정에 따라 현재 어업인 보유 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단축하여 실시하는 시나리오 1과 현재 어업인 보유 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보장하며 실시하는 시나리오 2를 가정하여 비용을 추정하였다.

둘째, 제도도입의 순응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현재 어업허가권을 소유한 전국의 어업경영주(선주)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방법은 면접원이 현지 방문하여 개별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유효표본은 동해안 57명, 서해안 61명, 남해안 82명 전체 200명이고 조사기간은 2010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표본추출은 임의할당추출법을 적용하였다. 자료분석은 통계프로그램 SPSS(Statistics Package for Social Science)을 이용하였다. 설문항목을 보면 어업현황과 문제점과 관련하여 조업현장의 문제점과 불법행위의 지속이유, 어업문제의 해결방안, 실제 조업여부의 판단근거, 어업허가 기간의 적정성 및 개선방향 등을 그리고 제도도입의 순응도와 관련하여 제도도입의 필요성, 기대효과, 수용의사, 도입시기, 업종별 및 지역별 실시, 정착방안 등 1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현행 종이형태의 어업허가증을 전자어업허가증으로 교체할 경우 발생하는 효과항목으로 어업질서의 확보효과 및 행정적 효과, 어업인 효과를 선정하였다. 어업질서의 확보효과는 어업일제정비의 효과에 포함되므로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행정적 효과는 훼손 및 어



## I. 입법평가의 개요

업허가 변경, 주소지 이전 등으로 인한 어업허가증의 재발급 신청의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조치 시간감소 및 노동력의 절감 효과 및 전자어업허가증의 도입을 통해 입출항 및 면세유사용, 어획량 등을 시스템화 하여 연계가 될 경우 발생하는 어업통계 및 조업실태 등의 데이터베이스 효율적 구축효과 등이 발생한다. 어업인 효과는 어업허가증 재발급 수수료 절감 및 재발급시 소요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의 절감효과, 훼손 및 분실 방지 어업인 만족효과 등이다. 전자어업허가증을 도입하기 위한 주요 기자재는 스마트카드(전자어업허가증), 어업허가증 인증 단말기, 발급 서버(OS 포함), 스마트카드 발급기(전사포함), 키(key) 발급시스템 등 초기투자비용과 운영비용이 필요하다. 비용은 하드웨어가 총 2,270,000만원, 소프트웨어가 20,000만원으로 총 247,000만원의 초기비용이 발생하며 연간 운영수리비로 19,300만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2장에서는 수산업의 현황과 어업허가 관리의 연관성을 통해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고찰하였고, 제3장에서는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논거로서 첫째로 일본 시즈오카현(靜岡縣)의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도입 및 시행에 따른 법적 고찰을 실시하였고, 둘째로 우리나라에서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시 비용효과 및 타당성을 분석하였으며, 셋째로 어업경영주(선주)를 대상으로 제도도입의 순응도를 측정하였다. 제4장에서는 앞에서 논의된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기대효과로서 예상되는 “허가관리의 실효성”을 설문 분석을 통해 그 관련성을 확인하고 허가관리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현행 종이재질의 어업허가증을 전자어업허가증의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분석결과에 대한 요약과 함의를 도출하였고 이를 기초로 어업허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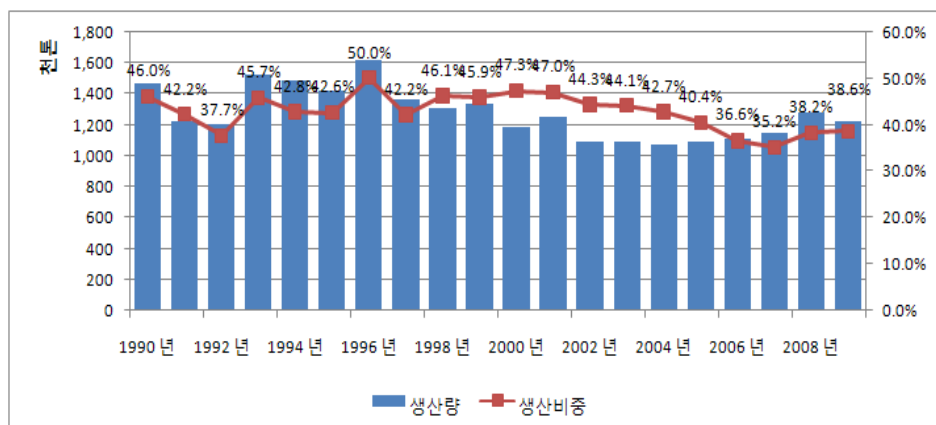
## Ⅱ. 수산업과 어업허가

### 1.

#### 1) 생산량의 정체

수산업의 생산은 일반해면어업의 생산량이라 할 수 있다. 일반해면어업의 생산량은 1990년 약 147만톤에서 2009년 약 123만톤으로 약 16.6% 가량 감소하였으며 전체 수산물의 생산량에 비교해 보았을 경우에는 1990년 약 46.0%에서 2009년 38.6%로 감소하였다. 이는 전체 수산물의 생산량 감소에 비하여 일반해면어업의 생산량 감소가 큰 것으로 파악되며, 양식어업의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반해면어업의 생산량 감소로 인하여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감소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2004년 이후 수산자원증대사업 및 여러 어업정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일반해면어업의 생산량은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해면어업의 생산량 변화추이는 다음의 <그림 2-1>와 같다.

<그림 2-1> 연근해어업의 생산량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어업조사자료 각 년도

## II. 수산업과 어업허가

수산업에 있어 일반해면어업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면 1945년 해방 이후 수산물 생산량의 약 97%(1946년)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그 이후 수산정책은 연근해어업을 대상으로 발전해왔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현재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약 38.6%로 그 비중은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수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어가인구<sup>1)</sup>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2009년 기준 전체 어업가구 69,000 가구 중 일반해면 종사 어업가구는 47,000 가구로 약 67%이상이 종사하고 있어 생산량에 비해 많은 어업인구가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sup>2)</sup>

### 2) 어업인구의 감소

어업인구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2-1>와 같다.

<표 2-1> 어업인구의 변화추이

	어가인구	어업종사자가구원	어업경영주
2000년	251,349	139,837	81,571
2001년	234,434	136,869	77,717
2002년	215,174	127,694	73,124
2003년	212,104	125,023	72,760
2004년	209,855	122,384	72,513
2005년	221,132	130,589	79,942
2006년	211,610	128,048	77,001
2007년	201,512	122,916	73,934
2008년	192,341	118,879	71,046
2009년	183,710	115,532	69,379
2000년대비(증감율)	-26.9%	-17.4%	-14.9%

자료: 통계청, 어업조사자료 각 년도

1) 어가는 '어업가구'를 지칭함

2) 통계청, 어가인구 통계자료 참조

우리나라의 어가인구는 2009년 기준 약 183,710명이며 이 중 어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115,532명, 어업경영주는 69,379명으로 파악된다. 어업인구는 10년 전인 2000년과 비교해볼 때 어가인구는 26.9%, 어업종사자는 17.4%, 어업경영주는 14.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어업인구의 감소 추세는 수산업의 인력감소라는 문제점을 발생시키며 수산업의 존립기반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가지고 올 것으로 예상되며 수산업 발전에 있어 어려움으로 존재하고 있다.

### 3) 어업인구의 고령화

어업허가 제도와 관련하여 어업인구 및 어업경영주의 감소뿐만 아니라 어업인구의 고령화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어업허가 제도와 관련해서는 총어업인구 및 어업종사자 인구도 중요하지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업경영주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보통 어업허가권자는 어업경영주(선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위의 문제에 대해 접근을 어업인구 전체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을 시에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음의 <표 2-2>와 같이 어업경영주의 수는 2005년 일시적인 증가 현상이 있으나 2000년 81,571명에서 2009년 69,37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경우 2000년 777명에서 2009년 77명으로 약 90%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어 그 감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반하여 70대 이상의 고령화 어업경영주 수는 2000년 5,049명에서 2009년 12,228명으로 약 14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어업경영주에 있어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0년전(2000년) 대비 증감율을 살펴보면 20대가 90.1% 감소, 30대는 71.6% 감소,

II. 수산업과 어업허가

40대 56.0% 감소, 50대 13.6% 감소, 60대 13.5% 증가, 70대는 142.2% 증가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2> 어업경영주의 연령별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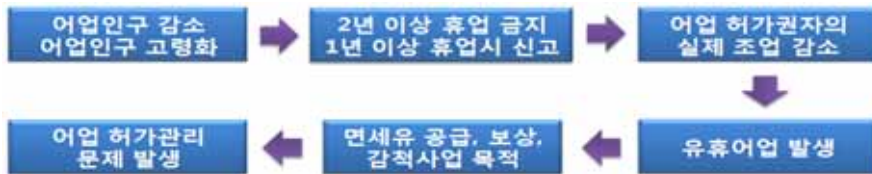
	합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인구	비율
2000년	81,571	777	8,020	21,803	25,527	20,395	5,049	6.2%
2001년	77,717	359	5,017	19,314	24,208	23,605	5,215	6.7%
2002년	73,124	293	5,076	18,816	23,674	20,081	5,183	7.1%
2003년	72,760	278	4,481	18,003	23,106	21,142	5,750	7.9%
2004년	72,513	243	3,950	17,456	22,878	21,685	6,301	8.7%
2005년	79,942	292	3,855	16,987	25,273	23,664	9,871	12.3%
2006년	77,001	365	3,506	15,048	24,684	24,120	9,278	12.0%
2007년	73,934	158	2,968	13,316	23,604	24,085	9,802	13.3%
2008년	71,046	103	2,564	11,520	22,524	23,688	10,646	15.0%
2009년	69,379	77	2,281	9,588	22,059	23,146	12,228	17.6%
2000년 대비증감율	-14.9%	-90.1%	-71.6%	-56.0%	-13.6%	13.5%	142.2%	

자료: 통계청, 어업조사자료 각 년도

이러한 분석결과는 타 업종으로 전환이 비교적 용이한 20~30대의 젊은층에서 어업경영주의 이탈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60대 이상의 고령화 어업경영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어업경영주의 감소는 20~30대에서 젊은 층의 타업종 전환으로 인한 어업이탈 및 고령화로 인한 어업경영포기 등이 주요 원인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어업경영주 전체 인구 중 70대 이상의 비율은 2000년 6.2%에서 2009년 17.6% 증가하고 있으며 결국 이러한 고령화 어업경영주는 건강 및 체력상의 문제로 인하여 어업경영능력의 한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유희어업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높다고 할 수 있다. 어업인구의 고령화와 어

업인구의 감소는 현재 2년 이상 휴업금지과 1년이상 휴업 시 신고라는 제도적인 틀 안에서 실제 조업인의 감소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결국 조업활동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고령화 어업인은 유휴어업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일부 면세유 공급 및 감척사업을 목적으로 어업허가만을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러한 유휴어업은 결국 어업관리정책의 비효율화를 초래하게 된다. 이를 간단하게 도식화 하면 다음의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 어업인구 감소에 따른 허가제도 영향



## 2. 가

### 1) 불법어업

불법어업으로 인한 조업질서의 파괴 및 어업인<sup>3)</sup>의 심리적 갈등 발생, 수산자원의 비효율적 사용 등은 결국 수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 중 하나가 불법어업 발생의 감소이므로 면밀하게 그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해경 등에서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불법어업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어업의 지속적 발생은 지도·단속의 문제도 있지만 어업허가제도의 문제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불법어업의 지도·단속은 일반적으로 사후적처리의 형태를

3) 본 보고서에서 어업인은 어업경영주(선주)를 지칭함

## II. 수산업과 어업허가

가지게 된다. 결국 불법어업이 발생한 이후 관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의 강화는 어업인이 불법어업으로 단속될 심리적 위협성을 상승시켜 예방적 효과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의 강화는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범죄의 기회의 감소기법 가운데 위협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단속은 불법어업의 발생을 구조적으로 감소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어업허가제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법어업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어업허가의 일제정비제도의 도입은 무허가 및 허가사항 위반 등의 일부 불법어업 유형의 발생 감소를 가지고 올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불법어업으로 인한 수산자원 이용의 감소 및 수산자원 증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2-3>과 같다.

<그림 2-3> 불법어업과 어업허가제도와의 관계



통계청의 불법어업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3>과 같이 2000년 3,161건, 2005년 4,054건 2008년 4,449건으로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관별 단속비율을 살펴보면 본부<sup>4)</sup>의 경우 2000년에는 약 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05년에는 약 18%, 2008년에는 약 25%로 단속 총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해경이 단속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이후로 약 50%

4) 농림수산물부 지도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국가어업지도선을 의미함

로 절반을 상회하는 단속 실적을 보여주고 있음. 2000년에는 약 35%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는 약 59%로 증가하였고, 2008년에는 약 56%로 단속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방자치단체는 2000년에는 약 48%의 높은 단속 비율을 나타내었으나 2005년에는 약 25%, 2008년에는 약 19%로 단속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중 불법어업의 발생이 높은 지역으로는 경상남도과 전라남도로 이는 우리나라 어업허가에 있어서 전라도지역의 집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표 2-3> 기관별 불법어업 단속현황 (단위: 척)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3,161	3,291	3,102	2,067	3,673	4,054	3,015	3,773	4,449
동·서해어업 지도사무소	502	417	606	527	416	723	637	954	1,106
해양경찰청	1,112	1,152	495	234	2,132	2,427	1,624	1,950	2,502
지방자치단체	1,547	1,722	2,001	1,306	1,125	904	754	869	841
부산시	145	194	201	117	111	98	116	111	108
인천시	12	25	44	19	19	2	23	11	29
울산시	18	7	3	29	13	21	9	9	8
경기도	59	44	70	95	66	62	24	34	17
강원도	86	29	39	49	85	26	14	5	11
충청남도	179	162	73	103	131	85	80	132	74
전라북도	139	159	168	97	114	120	57	68	79
전라남도	555	653	920	359	303	305	248	141	155
경상북도	45	67	32	61	60	28	23	34	24
경상남도	245	287	397	347	201	137	151	309	305
제주도	64	95	54	30	22	20	9	15	31

자료: 통계청, 불법어업단속통계 재작성

불법어업의 단속실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2-4>과 같이 무허가 및 어구위반이 가장 많은 단속건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조업구



## II. 수산업과 어업허가

역금지 및 허가사항 위반은 경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무허가 및 허가사항의 위반과 같은 경우는 결국 어업허가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불법어업 유형이라 할 수 있으며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발생단계에서 일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무허가 어업의 경우 대체적으로 연안어업을 중심으로 발생하게 되며 일부 허가이외의 어업행위를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표 2-4> 유형별 불법어업 단속현황 (단위: 척)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1월
계	3,673	4,054	3,015	3,773	4,449	4,634
무 허 가	1,172	1,194	825	1,018	1,288	1,504
조업구역	361	441	261	280	315	403
허가사항	306	514	361	583	444	258
어구위반	1,145	1,289	956	833	1,104	912
기 타	689	616	612	1,059	1,298	1,557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 내부자료

업종별 불법어업의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5>와 같이 기타어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이는 자망어업 및 통발어업, 연안복합 등이 주요 발생어업으로 파악된다. 여기서 기타 어업은 연안에서 발생하는 불법어업이 대부분 포함된다.

<표 2-5> 업종별 불법어업 단속현황 (단위: 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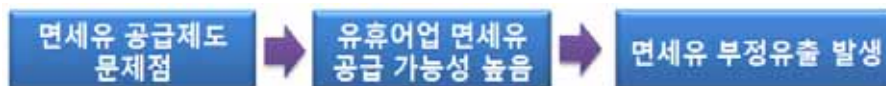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1월
계	3,673	4,054	3,015	3,773	4,449	4,634
대형기저 대형트롤	64	70	48	113	60	164
중형기저	40	23	30	7	41	10
소형기저	904	201	61	42	18	9
잡 수 기	80	98	73	67	120	156
기선형망	243	192	194	203	136	252
기 타	2,342	3,470	2,609	3,341	4,074	4,043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 내부자료

## 2) 면세유의 불법유출

면세유의 부정유출은 결국 면세유 공급제도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며 면세유 부정유출과 관련하여는 유희어업이 중요한 발생원인으로 예상된다. 어업허가 및 어선을 보유하고 있는 어업자는 어업을 목적으로 면세유를 공급 받을 수 있다. 유희어업자의 경우 어업허가 및 어선을 보유하고 있으나 어업활동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급되고 있는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신이 어업을 위하여 공급되는 면세유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적으로 유출하게 되는 가능성이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2-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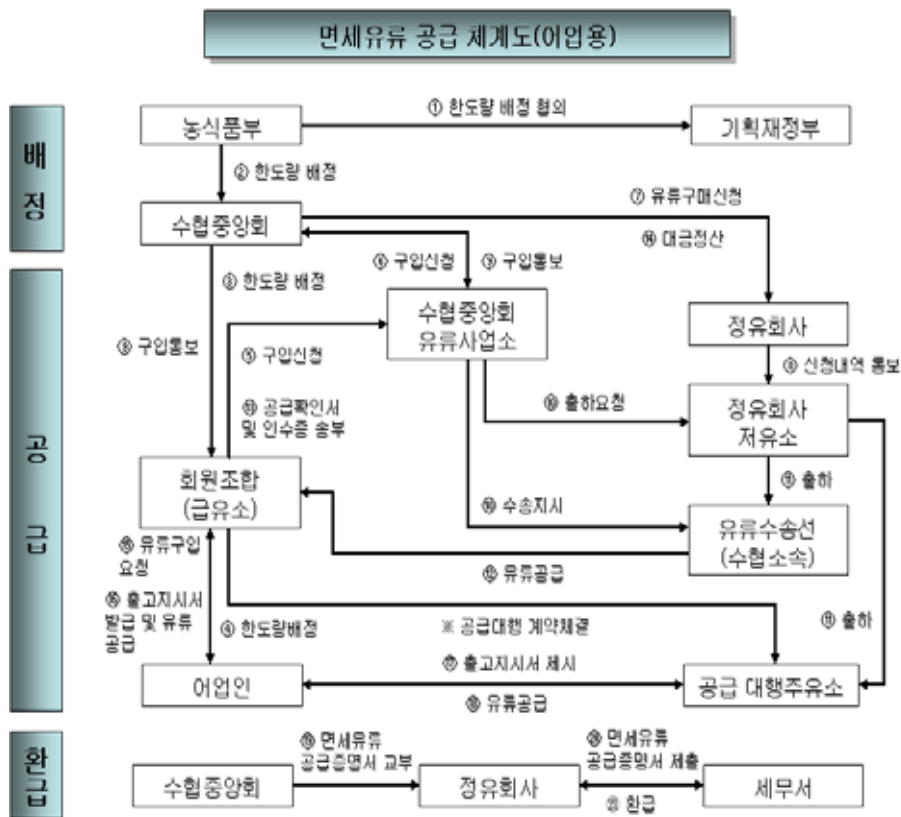
<그림 2-4> 유희어업으로 인한 면세유 부정유출



II. 수산업과 어업허가

면세유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2-5>와 같다. 어업용 유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가 한시적으로 감면되고 있으며, 2012년 6월 30일까지 100%, 그 이후로 12월 31일까지 75% 감면되는 실정이다. 면세유의 공급은 수협중앙회가 총괄을 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81개의 지구별 수협에서 유류공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림 2-5> 면세유의 공급체계



수협중앙회 공급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업용 면세유는 2008년 연간 969,000kl가 공급되어 어업인 조세 지원규모는 5,816억원 수

준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면세조치로 인하여 일반 시중의 유류가격과 면세유의 가격은 차이를 가지게 되며,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면세유 부정유출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의 표본·추적조사, 해경청의 연중 및 특별 기획수사 등 단속강화에 따라 최근 부정유출 적발물량 증가하고 있다. 면세유의 부정유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6>과 같다. 2005년도 약 816kℓ에서 2008년도에는 약 3,536kℓ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국세청 통보 면세유 부정유출 현황 (단위: 명, kℓ, 백만원)

	인원수	유출량	추징세액
2005년	99	816	373
2006년	170	2,587	2,162
2007년	50	1,671	1,335
2008년	62	3,536	2,258

자료: 농림수산물부 수산정책과 내부자료

부정유출 발생물량은 공급물량 대비 0.063%~0.20% 수준이나, 실제 부정유출 물량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정유출은 다른용도로 전용이 가능하고, 시세차익이 크며 공급대행주유소를 이용하는 휘발유에서 주로 발생한다. 휘발유는 자동차, 오토바이 등 내연기관에 전용이 가능하고 저경유는 디젤자동차(등유, 경유겸용 가정용보일러 등)에 전용 가능하다. 시세차익은 휘발유 > 고경유 > 저경유 순으로 높게 발생한다.<sup>5)</sup> 부정유출은 서해안지역의 휘발유 사용 소형 선외기 어선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으며, 위 지역은 휘발유를 사용하는 2톤 미만 소형선외기 어선이 많고 척당 휘발유 사용량이 많았으며 공급대행 주유소 운용 등으로 부정유출 소지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엽가울(2009년 1월) : 휘발유(66%), 고경유(52%), 저경유(51%)

## II. 수산업과 어업허가

조업사실 확인 관리 단계에서 어업인들은 공신력이 있는 위관증명서 보다는 주로 선박 입·출항 신고서, 사매매 증명서를 통해 조업사실을 확인 받고 있는 실정으로 선박 입·출항 신고의 규제완화 등에 따라 허위 입·출항신고 문제점 내재하고 있다. 대부분의 입·출항신고기관 민간 대행신고서(1,203개소 중 920개소)이고, 2톤 미만어선은 전화·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2005년 12월 선박안전조업규칙 개정)를 하게 되어 있어 사실확인에 무리가 있으며, 유희어업의 경우에도 면세유를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매매 거래증명 서류는 위조 가능성 등으로 인해 신뢰성이 결여되어 실제 수산물 거래의 증빙서류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 관리 단계에서도 시간계측기는 노출(염분, 해수)에 따른 잦은 고장 발생, A/S 지연 및 보증기간 경과 등에 따른 어업인들의 사용기피 및 엔진 가동시간 측정 한계 등으로 실제 운용실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면세유 대량 사용 어업인이 반기별(1월, 7월)로 생산실적을 서류 미제출시 면세유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면세유의 부정유출의 발생형태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로는 어업인이 공급대행주유소(중간매집상 포함)와 공모하여 면세유를 판매하는 형태로 어업인이 중간 매집상에게 출고지시서를 양도하거나 주유소로부터 정상 출고후 불법 판매를 하는 것이다.

이를 주유소업자(중간매집상 포함)가 시중에 불법 유통하게 된다. 두 번째 형태는 어업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공급받아 개인차량용, 어장정화사업 등과 같이 비 어업용으로 사용하는 형태이다. 이와 같은 두 형태는 결국 어업인이 조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유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부정유출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형태는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선박에 대한 면세유 공급이다.

이는 어업인의 미신고로 무허가, 말소 선박이나 사망자, 휴업어선 등에 면세유 공급하는 것으로 일제정비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면세유의 공급환경으로 말미암아 유희어업에 대한 면세유의 공급 등과 같은 면세유 부정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 3) 감척사업의 효율성 감소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감척사업은 국내외적인 수산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신해양질서, WTO/FTA 등)과 악화된 연근해어업경영수지 제고 및 어업자원의 회복에 대한 필요성에 의하여 연근해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여 실시되고 있다. 감척사업은 어업노력량을 감축함으로써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하기 위함이며, 이는 생물경제학적 어획이론에 이론적 바탕을 가진다.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시 유희어업의 정리를 통하여 신규어업의 진입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어업구조조정은 1993년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 수산자원량에 비하여 노력량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노력감의 감축을 위한 감척사업이 실시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어업에 투입되는 적정 노력량의 실현을 위한 적정 어선세력을 살펴보면 2009년 기준 총 49,544척으로 약 3,667척이 더 감척되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이는 여전히 노력량은 적정세력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정 감척 척수 및 감척척수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표 2-7>와 같다.

II. 수산업과 어업허가

<표 2-7> 어업감척을 위한 적정감척 척수 (단위: 척)

	근해어업	연안어업	계
적정세력(A)	2,342	47,202	49,544
적정감척척수	3,222	15,844	19,066
감척척수	2,509	12,890	15,399
감척필요척수	713	2,954	3,667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내부자료

우리나라 연근해어선의 구조조정 정책은 수산자원관리 및 어업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향후에도 적정 어업노력량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최근 연근해어선의 구조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8>과 같이 2005년에서 2010년까지 약 12,492척을 감척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8> 연근해어선의 구조조정 현황 (단위 : 척)

구 분	연 안		근 해		합 계	
	척 수	금 액	척 수	금 액	척 수	금 액
2005년	841	333	0	0	841	333
2006년	1,598	503	0	0	1,598	503
2007년	2,836	1,000	86	294	2,922	1,294
2008년	4,852	1,541	352	1,204	5,204	2,745
2009년	1,610	805	123	490	1,733	1,295
2010년 <sup>6)</sup>	0	0	194	775	194	775
합계	11,737	4182	755	2763	12,492	6945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내부자료

6) 2010년 연근해어선 구조조정 현황자료는 계획에 따른 추정치임

일부 어업인들은 허가받은 어선 없이 허가증만 소지하고 감척사업에 참여하는 등 어업구조조정사업의 효과를 상쇄하고 있으며,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에서 감척대상어선을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을 부정유출한 경우도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다음의 <그림 2-6>과 같이 어업허가제도의 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함에 따라 그 피해가 자원조성 및 어업구조조정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6> 감척사업의 실효성 저하



#### 4) 임의 어선대체

허가받은 어선이 개조 및 바뀌는 경우 새로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의 어선대체가 성행하고 있어 어업허가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2010년부터 2톤 미만의 소형 선박에 대해서도 정기검사가 길이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나 등록 당시와 상이한 선박에 대한 명확한 검사기준 마련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선세력에서 가장 많은 척수를 보유하고 있는 2톤 미만의 소형 선박에 있어서 그동안 정기검사에서 제외돼 임의개조 및 증톤하는 등 안전이 우려되는 사례가 늘어나도 이를 제어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등록당시와 상이한 선박이 30%~4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다른 어선으로 임의 대체한 경우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II. 수산업과 어업허가

기존 선박에 대한 검사가 시행되면 임의 변경 선박은 등록원부상태로 선박을 원상 복구해야 하나 이를 위해 금전적 부담 및 시간의 소요로 선박검사를 기피하는 사례와 민원발생으로 이어져 혼란야기가 우려된다. 지금까지 검토한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도입관련 현황의 주요항목과 어업허가제도와의 상관관계를 정리해보면, 먼저 인구감소의 경우 어업인구 감소 및 어업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어업 허가권자의 실제 조업이 감소하게 되므로 유희어업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어업허가관리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어업허가제도 및 지도단속제도의 문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어업의 경우 어업허가의 일제정비를 통해 불법어업의 감소와 수산자원 증대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희어업에 면세유를 공급하게되어 생기는 면세유 부정유출 문제를 방지하고, 유희어업 및 어선 없는 허가증 소지자 등으로 인해 저하된 감척사업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도 어업허가제도의 관리가 필요하다.

### 3. 가

앞에서 논의되었던 수산업의 현황과 어업허가의 관리에 대한 상관관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업인구의 감소는 현재 2년 이상 휴업금지와 1년 이상 휴업시 신고라는 제도적인 틀 안에서 고령화로 인한 어업불가능으로 인한 자연적 어업이탈과 어업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인한 어업이탈 등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실제 조업인의 감소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결국 조업활동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고령화된 어업인은 유희어업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일부 면세유 공급 및 감척사업을 목적으로 어업허가만을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러한 유희어업은 결국 어업관리정책의 비효율화를 초래하게 된다.

둘째, 불법어업은 결국 어업허가제도 및 지도단속 역량부족과 같은 이유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무허가어업 및 어구위반, 허가사항위반과 같은 불법어업은 어업허가에 있어 문제점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어업허가제도의 체계화 및 정비가 없을 경우 불법어업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어업허가 일체정비제도가 도입될 경우 불법어업의 감소될 수 있으며 수산자원의 증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유희어업의 발생으로 인한 면세유의 부정유출로 실제 면세유류 사용실적 및 조업사실의 확인을 통하여 면세유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업허가제도의 체계화 미흡으로 무조업 어선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무조업 어선의 경우 사매매 거래증명서 위조 및 미운항 어선 출·입항 신고로 조업활동을 하지 않고 면세유를 부정공급 받아 유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넷째, 감척사업과 어업허가제도와의 상관관계로 어업허가제도의 관리문제는 결국 유희어업선이 감척사업에 참여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감척사업의 목적이 과잉어획노력의 감소로 수산자원을 고려한 적정 노력량의 달성이라고 하였을 때는 무조업 어선과 유희어선에 대한 감척사업으로 감척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된다.

이러한 불법어업, 유희어선, 감척사업의 실효성 감소 등 수산업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어업허가 일체정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현재 어업허가는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시마다 새로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어업허가 일체정비제도는 단순한 허가관리가 넘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허가관리라고 볼 수 있다. 즉, 업종이나 개인에 따라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이 상이하여 복잡하게 운영되던 허가관리를 전체 어업경영주(선주)에 대해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과 시작일이 일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더 나

## II. 수산업과 어업허가

아가서 불법어업 및 무조업 어선에 대해서는 허가절차와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하여 어업허가의 신규진입과 퇴출을 연계함으로써 허가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를 도입하려는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는 어업경영주의 남아있는 허가기간에 관계없이 정부가 공고한 날(예, 2012년 12월 31일)이 허가기간의 종료일(예, 2012년 12월 31일)이 되도록 허가기간 종료일을 일치하게 하고, 새로운 5년의 어업허가를 허가절차에 따라 일제히 발급하여 다음 허가기간 종료일(예, 2017년 12월 31일)이 되도록 허가의 유효기간을 통일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제3장에서는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논거로서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일본사례분석을 통한 법적 고찰, 제도 도입의 비용효과분석, 설문조사를 통한 제도 도입의 순응도 측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앞에서 논의된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기대효과로서 예상되는 “허가관리의 효율화 측면”을 설문분석을 통해 관련성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전자어업허가증의 도입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 Ⅲ.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분석결과

#### 1.

##### 1) 어업의 현황과 문제점

수산업과 어업허가제도 도입관련 현황의 주요항목에 있어서 어업허가제도와와의 상관관계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업인구의 감소는 현재 2년 이상 휴업금지와 1년 이상 휴업시 신고라는 제도적인 틀 안에서 고령화로 인한 어업불가능으로 인한 자연적 어업이탈과 어업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인한 어업이탈 등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실제 어업인 감소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결국 조업활동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고령화 어업인은 유희어업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일부 면세유 공급 및 감척사업을 목적으로 어업허가만을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러한 유희어업은 결국 어업관리정책의 비효율화를 초래하게 된다.

둘째, 불법어업은 어업허가제도 및 지도단속 역량부족과 같은 이유로 발생하게 된다. 무허가어업 및 어구위반, 허가사항위반과 같은 불법어업은 어업허가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어업허가제도의 체계화 및 정비가 없을 경우 불법어업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가 도입될 경우 불법어업의 일부가 감소될 수 있으며, 수산자원의 증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유희어업의 발생으로 인한 면세유 부정유출의 발생이다. 실제 면세유류 사용실적 및 조업사실의 확인을 통하여 면세유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업허가제도의 체계화 미흡으로 무조업어선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무조업어선의 경우 사매매 거래증명서

### Ⅲ.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분석결과

위조 및 미운항 어선 출·입항 신고로 조업활동을 하지 않고 면세유를 부정공급 받아 유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넷째, 감척사업과 어업허가제도와 상·관관계로 어업허가제도의 관리문제는 결국 유희어업선이 감척사업에 참여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감척사업의 목적이 과잉어획노력의 감소로 수산자원을 고려한 적정노력량의 달성이라고 하였을 때는 무조업선 및 유희어선에 대한 감척사업으로 감척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게 된다.

## 2)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일본사례

### (1) 어업허가제도

일본은 선박에 의하여 영위하는 어업으로서 정령(政令)에 의하여 정한 어업을 지정어업이라 하며 이는 주무대신의 허가를 선박마다 또는 어업마다 받아야 한다. 1984년 정령에 규정한 일본의 지정어업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근해기선저인망어업, ② 이서기선저인망어업, ③ 원양저인망어업, ④ 북양연승, 자망어업, ⑤ 모선식저인망어업, ⑥ 대중형선망어업, ⑦ 대형포경어업, ⑧ 소형포경어업, ⑨ 모선식포경어업, ⑩ 원양다랑어, 참치어업, ⑪ 근해다랑어, 참치어, ⑫ 모선식다랑어, 참치어업, ⑬ 중현연어, 송어유자망어업, ⑭ 모선식 연어, 송어어업, ⑮ 모선식계어업, ⑯ 백첩등 패류등 채취업 등이다.

어업법상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정어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단, 제59조(代船허가)또는 전조(제58조 승계허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경우는 종전의 허가의 잔존기간으로 한다. 둘째, 전항의 유효기간은 동일의 지정어업에 있어서는 동일의 기일에 만료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 주무대신은 수산동식물의 번식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 있어서 중앙어업조정심

의회는 의견을 들어 제1항의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제2항에 동일지정어업은 동일한 기일에 만료할 수 있도록 강제규정한 점이다.

주무대신은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중앙어업조정심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유효기간의 단축을 정하도록 한 점은 우리의 관련 규정보다 그 목적과 방법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것은 지정어업이 일제정비를 함에 있어 정비기마다 자원상황, 어업조정과 어업인 수, 경영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인 척수 등의 허가내용을 공시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허가기한의 만료일을 같은 달 같은 날자에 맞추려는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2) 시즈오까현(靜岡縣)의 어업조정규칙

일본 시즈오까현(靜岡縣)의 「시즈오까현 어업조정규칙」은 전문 62개 조, 부칙으로 규정되어 1964년에 제정된 후 현재 19차에 걸쳐 개정 시행되고 있다. 이 규칙은 우리나라의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 해당된다. 이 규칙의 목적은 제1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어업법 및 수산자원보호법 기타 어업에 관한 법령과 함께 시즈오까현에 있어 수산자원의 보호, 어업단속 기타 어업조정을 도모하고 어업질서의 확립을 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시즈오까현 어업조정규칙에 나타난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와 관련된 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조항이다. 제9조 ① 어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단, 증양식용의 종묘채포를 목적으로 하는 어업(이하 종묘어업이라 함)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고하고 제27조 또는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종전 허가의 잔존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유효기간은 동일어업에 있어서는 동일한 기일에 만료되도록 정하여야한다. ④ 도지사는 어업조정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한

### Ⅲ.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분석결과

도에 있어 해구어업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항의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둘째, 허가의 내용에 위반하는 어업의 금지이다. 제15조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어업의 허가의 내용에 위반하여 당해어업을 영위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제22조 도지사는 기업의 인가를 받은 자가 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 있어 신청의 내용이 인가를 받은 내용과 동일하며 또한 당해인가에 관계되는 당해어업의 유효기간 중일 때는 다음 조 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의 유효기간 중일 때는 허가하는 것으로 한다.

셋째, 허가 등을 안 하는 경우이다. 제23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업의 허가 또는 기업의 인가를 하지 않는다. 1. 신청자가 다음 조에 규정하는 적격성을 갖지 않는 경우의 자 2. 그 신청에 관계되는 어업과 동종의 어업의 허가를 부당하게 집중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어업조정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도지사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하지 않을 경우는 해구어업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넷째, 허가 등에 대한 적격성이다. 제24조는 어업의 허가 또는 기업의 인가에 대하여 적격성을 가진 자는 다음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어업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정신을 현저히 결여한 자 또는 전호의 규정에 의해 적격성을 갖지 않는 자가 어떠한 명목에 의한 것이라도 실질상 당해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다섯째, 허가 등의 기준이다. 제26조 ① 정수어업에 관계되는 허가 또는 기업의 인가의 신청이 정수를 초과한 경우는 적어도 다음 각 호에서 드는 사항을 감안하여 어업마다에 허가 또는 기업의 인가의 기준을 정하여 이에 따라 허가 또는 기업의 인가를 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산자원의 보호배양 또는 어업마다 어업조정을 위해 연안어업의

경영을 돕기 위하여 이에 따라 당해어업에의 전환을 도모할 때 2. 당해 어업의 종사자가 당해어업자로서의 자립을 도모할 때 등이다.

여섯째, 허가 등의 취소이다. 제30조 ① 도지사는 어업의 허가 또는 기업의 인가를 받은 자가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적격성을 가진 자가 아니 되었을 때는 그 허가 또는 기업의 인가를 취소한다. ②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어업의 허가 또는 기업의 인가를 하려할 때는 미리 해구어업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과 함께 당해처분에 관계되는 청문의 기일에는 심리를 공개로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곱째, 어업조정 등을 위한 허가 등의 변경, 취소 또는 조업정지이다. 제32조 도지사는 수산자원의 보호 기타 어업조정을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어업의 허가 또는 기업의 인가에 대하여 그 내용을 변경,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이고 취소 또는 조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어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 또는 이들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위반한 때도 전항과 같이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은 동항의 위반자에 관계되는 어업의 전부의 허가에 대하여 행할 때가 있다.

시즈오까현 어업조정규칙을 종합해보면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와 관련된 조문은 허가에 있어 허가하지 않는 경우와 허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정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청자가 당해어업에 의존하는 정도를 고려하는 경우와 선박마다 허가를 요하는 어업에 있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기업의 인가를 하는 신청에 관계되는 선박의 신청자별 척수 등을 감안하여 허가의 집중을 고려하도록 한 점은 어업허가권자의 자율적인 판단을 제고할 수 있다.

특히 신청자에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의 어업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정신을 현저히 결여한 자일 것, 적격자의 명시부분은 그 운용을



### Ⅲ.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분석결과

어떻게 하느냐의 의문이 있으나 그 실효성을 찾아 우리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즈오카현에서는 지사허가어업 일제정비제도의 허가 등에 관한 취급 방침 등을 제정을 통하여 일제정비제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sup>7)</sup>

#### (3) 일본사례의 시사점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는 어업행위 질서를 제고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유지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수산업법 제46조에서 어업허가 등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임차한 어선이나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유효기간 제도를 규정해놓고도 허가처분의 1개 허가사항에 포함시켜 단지 허가존속의 유지를 5년간 보증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다. 이와 같이 유효기간 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업관련 실무자의 유효기간 제도 설립 취지의 인식 부족이라 할 수 있다. 허가의 유효기간 5년이 되면 다시 신청에 의하여 허가해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이 만연화 되어있기 때문이다.

둘째, 목적의 명시가 없어 유효기간의 행정적 활용의 모멘텀(momentum)을 버리지 못하였다.

셋째, 수산자원의 보호, 어업세력의 균형, 어선어구의 발전·변형상황(불법적 또는 현실성 결여 등에 대한 고려)에 따른 허가처분의 대응 미흡이다. 수산자원의 보호는 자율관리어업, 자원회복계획에만 치중했지 어업허가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망각하고 있었다.

넷째, 수산업법 제46조를 규정하면서 당연히 허가의 일제정비문제를 염두에 둔 허가처분의 기본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

7) <부록 1> 참조

다섯째, 허가 유효기간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한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허가 유효기간의 일률적인 5년의 시행은 어장의 위치적 조업조건을 고려할 때 현행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의 분류는 그 목적에 있어 명확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현행 8톤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연안어업 톤급 구별을 좀 더 세분화 할 필요성이 있다. 5톤 이하를 연안어업으로 하고 5톤 이상, 15톤 미만은 연해어업, 15톤 이상은 근해어업 등으로 편제 개편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을 계층화를 해놓고도 시기나 어장에 따라 함께 조업을 하는 자기모순을 가지고 있어 연근해 어선이 구별없이 조업을 함으로써 자원의 남획과 어업질서를 악화시킨다면 제도의 수정을 통한 대응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여섯째, 연안어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5톤 이하 어선의 허가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어선척수의 적정성, 업종간 어장의 변화상황, 업종간의 갈등상황의 해소방법, 당초허가시의 어구의 변동 상황과 당해어장에 적합성여부 등을 파악하여 일제정비를 통한 허가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단축으로 어업인의 행정수속의 불편 및 어업인 순응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조업구역 문제 해결 및 갈등해소, 자원과 어획노력의 균형 도출 가능 등 수반되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 3)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기대효과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수산업 현실에 대한 어업인의 이해와 수산자원의 보호의식 등 인식제고, 법·제도적 기반 확보, 연안어업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어업인들의 이해는 결국 어업허가권을 보유하고 있는 어업자들이 일제정비에 대한 순응을 의미하며 어업인들의 이해 없이는 실시

### Ⅲ. 어업허가 일체정비제도의 분석결과

되는 어업허가 일체정비제도는 운용의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제도 도입이 미래의 수산업에 있어 유용할 것이라는 확신을 어업인이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법·제도적인 기반확보는 일체정비를 도입하는 데 있어 법·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어업허가 일체정비제도의 도입에 있어 타당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연안어업의 구조적인 문제해결은 현재 연안어업의 겸업어업문제 및 대상어종 문제 등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업허가 일체정비제도의 도입을 통한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첫째, 연안어업들의 조업의 안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둘째, 부정한 방법의 조업자를 색출하기 용이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된다. 셋째, 연안어업인의 경영안정에 이바지 할 것이다. 이에 비해 연안어업의 경우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별 어선의 어업허가의 중복가능<sup>8)</sup> 및 연안복합어업 등과 같은 복수어업 문제, 이로 인한 통계적 오차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그러므로 국가의 어업관리와 자원관리의 측면에서 어업관리의 정리가 필요하다.

어업허가 일체정비제도는 다음과 같은 파급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첫째, 허가행정을 효율화하여 허가방법과 제도개선의 기회를 갖게 된다. 둘째, 허가우선순위에 당해어업의 종사자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어업인에게 활발한 조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어업허가의 승계허가의 인정을 통하여 연안어업의 경영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와 같이 어업허가의 일체정비제도는 여러 부분에서 국가의 어업관리와 자원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제도

---

8) 어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규칙 제4조 2항에서는 어선을 허가 대상으로 하는 어업 중 근해어선, 연안어선, 구획어업어선 중 새우조망어업·실뱀장어안강망·패류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의 구조와 성능에 비추어 같은 어선으로 두 종류 이상의 어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어선으로 3종류까지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의 도입은 시급하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어업허가제도의 실효성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 1) 분석개요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과 같은 제도개선은 불법어업의 방지 및 어업구조조정사업의 실효성 확보 등 사회적·경제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게 되며, 정책수행비용 및 어업인 순응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 등도 동시에 발생시킨다. 일반적인 제도도입과 같은 정책사업의 추진은 사회·경제적 효과의 발생만을 고려하여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추진상의 효율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신규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는 현재 인근해 어업 중에서 어선어업의 대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떠한 효과와 비용을 가지고 오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을 통해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효과 및 비용을 비교분석하고, 사업의 경제적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제도를 도입하였을 경우의 사회·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대상은 수산업법상 허가어업 중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등 세 가지가 여기에 해당된다.

### 2) 효과추정

#### (1) 효과항목의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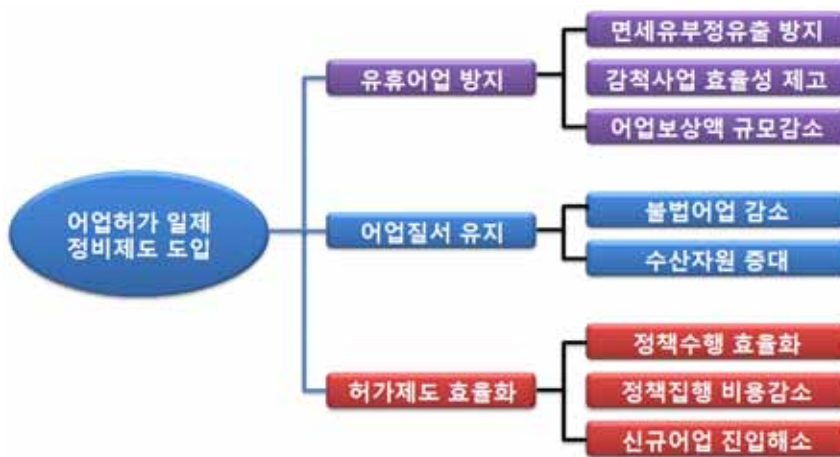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시 발생하는 효과항목 도출은 현재 어업허가의 문제점 및 어업허가관련 현황분석, 어업인 면담조사, 전문

### Ⅲ.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분석결과

가회의 등을 통하여 도출되었다. 도출된 효과항목을 나열한 후 효과의 중복성, 이전지출의 가능성 등의 이유로 소거법을 실시하여 상위항목과 세부항목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을 도출된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도입의 사회경제적인 효과는 크게 유휴어업의 방지효과, 어업질서의 유지효과, 허가제도의 효율화 효과로 분류된다.

유휴어업의 방지효과는 그 세부효과로서 면세유 부정유출 방지효과, 감척사업의 효율성 제고효과, 어업보상액의 규모감소 효과 등이 포함된다. 어업질서의 유지효과는 불법어업의 감소 효과, 수산자원의 증대 효과가 포함된다. 허가제도의 효율화 효과는 간접적으로 발생되며 계량화를 하기 힘든 효과들로 정책수행의 효율화 효과, 정책집행의 비용감소효과, 신규어업의 진입해소 효과 등이 포함된다. 효과의 경제적 가치 추정은 계량화가 가능한 효과와 계량화가 불가능한 효과를 구분하였으며 계량화가 가능한 효과에 대해서는 그 편익을 금액으로 산출하였다. 세부적인 조사설계 및 설문구성은 <부록 3>, <부록 4>와 같다

<그림 3-1> 제도도입의 사회경제적 효과



## (2) 불법어업 감소에 따른 어획금액 보전효과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은 어업허가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불법어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불법어업 감소에 따른 직접 어획금액 보전효과는 불법어업을 통해 어획되는 어획량의 상업적 이용액이라 할 수 있다. 불법어업 감소에 따른 직접 어획금액 보전효과의 추정은 아래 식과 같이 추정이 가능하다. 즉, 어획금액의 보전효과는 각 업종별로 불법어업 단속건수×업종별 불법어업의 정도를 조정할 수 있는 가중치×업종별 단위노력당 어획량(CPUE)×업종별 어획물의 평균 가격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text{어획금액 보전효과}(U_1) = \sum_{i=a}^n (R_i \times W_i \times CPUE_i \times P_i)$$

$R_i$  = 각 업종별 불법어업 단속건수

$W_i$  = 각 업종별 불법어업 조정치

$P_i$  = 업종별 어획물 평균가격 (원/kg)

$CPUE_i$  = 업종별 단위노력당어획량

연간 총불법어업단속에 따른 직접어획금액 보전효과는 연간 약1,018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도입으로 일부 불법어업 단속유형에 따라 발생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시 감소시킬 수 있는 유형은 무허가어업과 허가사항위반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총 영향정도에 따라 3개의 가정을 구성하였다. 다음의 <표 3-1>와 같이 어업허가제도 일제정비제도로 인한 불법어업 감소효과는 연간 불법어업단속에 따른 직접어획금액 보전효과(1,018억원)에

Ⅲ.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분석결과

대한 무허가 비율과 허가사항위반 비율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효과를 추정해보면 최소 연간 39.6억원에서 최대 198.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 제도도입으로 인한 불법어업감소 편익 (단위: 억원)

	가정 1(부정적)	가정 2(일반)	가정 3(긍정적)
효과 추정금액	무허가어업 및 허가사항위반 불법어업 10%감소	무허가어업 및 허가사항위반 불법어업 30%감소	무허가어업 및 허가사항위반 불법어업 50%감소
	39.63084	118.8925	198.1542

(3) 수산자원의 미래가치 보전효과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미래가치 보전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앞서 불법어업으로 인한 직접어획금액의 추정에서 사용되었던 가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불법어업 단속유형을 고려하여 계량적으로 추정하였다. 다음의 <표 3-2>와 같이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무허가어업 및 허가사항위반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어업 감소 가정에 따라 그 효과를 추정해보면 연간 약 20.7억원에서 103.7억원 정도로 분석되었다.

<표 3-2> 제도도입으로 인한 미래가치 보전효과 (단위: 억원)

	가정 1(부정적)	가정 2(일반)	가정 3(긍정적)
효과 추정금액	무허가어업 및 허가사항위반 불법어업 10%감소	무허가어업 및 허가사항위반 불법어업 30%감소	무허가어업 및 허가사항위반 불법어업 50%감소
	20.74974	62.24922	103.7487

## (4) 어업구조조정의 실효성 제고효과

어업허가제도의 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함에 따라 그 피해가 자원조성 및 어업구조조정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수산경제이론에 따르면 감척을 통해서 어획노력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수산자원의 회복을 가지고 오게 되며, 과잉노력상태에서 적정노력량 상태로 변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실시한 ‘연근해 무조업선 일제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약 56,000척의 어선 중 약 2.32%가 무조업 어선으로 추정되며, 이를 적용 하였을 때 이전에 추진되었던 연근해 어업의 감척사업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은 15,399척의 어선 중 357척이 무조업 어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27억원을 차지한다. 이미 추진하였던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의 사업비는 매몰비용으로 규정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감척사업에 대하여 어업허가일제정비제도를 통하여 무조업 어선을 선별할 경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의 효율성을 제고 시킬 수 있다. 제도도입을 통해 발생하는 감척의 실효성 제고효과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text{감척사업 실효성 제고효과}(U_3) = N \times R \times P$$

N = 감척필요척수(미래 감척발생 가능척수)

R = 무조업선 추정비율(2.32%)

P = 척당 감척 추정비용(0.35억원)

그러나 미래에 발생할 감척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규모를 규정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최근 WTO/FTA 및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 어업환경악화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감척사업의 규모는 예상 척수보다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감



Ⅲ.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분석결과

척필요척수를 기준으로 증가를 가정하여 3개의 가정별 어업허가일제 정비로 인한 감척사업 실효성 제고효과를 추정해보면 다음의 <표 3-3>와 같이 약 30.31억원에서 약 45.47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표 3-3> 제도도입으로 인한 감척실효성 제고효과

	가정 1(부정적)	가정 2(일반)	가정 3(긍정적)
미래 감척발생가능(척)	감척필요척수 적용	감척필요척수의 30% 증가	감척필요척수의 50% 증가
	3,667	4,767	5,501
무조업선 추정비율	2.32%		
연안어업 감척추정비용 (억원/척)	0.3563		
감척사업 실효성제고 효과추정금액(억원)	30.31	39.41	45.47

(5) 면세유의 불법유출 방지효과

일부 유희어업 중에는 면세유를 공급할 목적으로 어업허가증만 보유한 어선도 다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면세유의 부정유출 발생물량은 공급물량 대비 0.063%~0.20%수준이나 실제 부정유출 물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유희어업 및 어업허가증만 있는 어선의 연간 면세유 부정유출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금액으로 추정해보면 전체 어업에서 무조업어선 비율과 1인당 부정유출량, 염가율, 추징세액 등을 근거로 산출이 가능하다.

$$\text{면세유 부정유출 방지 효과}(U_4) = (S \times R) \times Q \times P \times T$$

- S= 연안어업 어선척수
- R = 무조업선 추정 비율(2.32%)
- Q = 척당 부정유출물량
- P = 면세유류 단가
- T = 염세율

척당 면세유의 부정유출물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수산정책과의 부정유출 건수 및 부정유출량 보고자료를 이용하여 척당 부정유출 물량을 추정하였다. 약 1,177척이 면세유 부정유출 어선으로 우려되며, 무조업 어선이라 할지라도 전체 어업인이 면세유 부정유출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무조업 어선의 각 10%~50%가 부정유출을 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를 근거로 어업허가 일제 정비제도의 도입을 통한 면세유의 부정유출 방지 효과를 계량적으로 추정하면 다음의 <표 3-4>와 같이 연간 약 10.5억원에서 52.7억원 정도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3-4> 면세유의 부정유출 방지 효과 (단위: 명, ℓ, 억원)

	가정 1(부정적)	가정 2(일반)	가정 3(긍정적)
면세유부정유출척수	무조업선 1,177척의 10% 부정유출	무조업선 1,177척의 30% 부정유출	무조업선 1,177척의 50% 부정유출
	117.74	353.23	588.72
척당부정유출물량	33,415		
총유출물량	3,934,437	11,803,311	19,672,186
단 가	157,672원/드럼		
염세율	34%		
편 익	10.5	31.6	52.7

Ⅲ.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분석결과

3) 비용추정

어업허가 일제정비 제도도입에 대한 발생비용은 크게 제도도입 순응비용 및 정책집행 비용 등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제도도입에 있어 집행비용은 정확하게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제도도입으로 인한 정책집행의 효율성 증대효과<sup>9)</sup>와 상쇄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어업인 정책순응비용만을 고려하였다. 정책순응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CVM모형(Contingent Value on Method, 조건부가치추정법)<sup>10)</sup>을 이용하였다. 다음의 <표 3-5>와 같이 제도의 도입 시기 규정에 따라 현재 어업인 보유 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단축하여 실시하는 방안과 현재 어업인 보유 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보장하며 실시하는 방안의 2개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비용을 추정하였다.<sup>11)</sup>

<표 3-5> 제도도입의 비용추정 시나리오

시나리오 1	현재 어업인 보유 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단축하여 실시 방안		
시나리오 2	현재 어업인 보유 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보장하며 실시 방안		
	잔존어업허가기간	시나리오 1 제도도입 시점	시나리오 2 제도도입 시점
A 어업인	3개월	3개월후 실시 (A 어업인 기준)	4년 3개월후 실시 (D 어업인 기준)
B 어업인	1년		
C 어업인	3년		
D 어업인	4년 3개월		

9) 미래에 발생할 정책의 효율적 집행 가능성 및 제도 도입을 통한 정책의 효율성

10) CVM은 공공사업의 추진에 따라 공급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내용을 설명한 후 설문조사를 통해 개인이나 집단이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되는 금액(WTP, Willingness To Pay: 지불의사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공공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11) <부록 3>, <부록 4> 참조

시나리오 1의 경우는 장점으로 제도도입 시기의 단기성 및 조절가능 유용성을 가지게 되며, 단점으로는 잔존유효기간의 단축어선이 발생함에 따라 어업인 정책 순응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시나리오 2의 경우 장단점은 시나리오 1과 반대로 장점으로는 현재 어업인의 어업허가 유효기간을 보장해 줌으로써 정책 순응비용이 시나리오 1보다는 작게 나타난다는 것이며, 단점으로는 단기적으로 제도도입이 불가능하여, 장기간 시간이 흐른 후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도입의 확실성이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분석에서는 제도 도입에 대한 어업인의 순응비용의 수용비용 구하기 위하여 절단평균을 사용하였으며, 전체 값의 분포 중 상위 10%를 제외한 값의 평균값을 WTA(Willingness To Accept: 수용의사금액)<sup>12)</sup>의 대표값으로 사용하였으며, 모형식의 계수값을 이용하여 절단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상기 과정에서 나온 대표값은 어업인 개인의 WTA 값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추정된 개인의 WTA를 이용하여 전체 어업인에 대한 어업허가 일제 정비제도의 정책순응 비용에 대하여 추정하면 다음의 <표 3-6>과 같다.

<표 3-6> 시나리오별 어업인 1인당 WTP (단위: 만원)

	평균편차비율	최 대	최 소	평 균
시나리오 1	34.9	221.7	107.0	164.3
시나리오 2	29.2	25.4	17.4	22.1

앞에서 도출된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에 대한 어업인 1인당 평균 순응비용을 이용하여 전체 어업인에 대한 순응비용을 추정하였다. 실제로 전체 연근해어업 어업인에 대하여 정책순응비용을 추정하기 위하여 어업허가정수 및 건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대형선망, 쌍끌

12) WTA는 '수용의사금액'으로 받고 싶은 금액을 말한다. 이에 비해 WTP는 '지불의사금액'으로 주고 싶은 금액을 말한다.

### Ⅲ.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분석결과

이 대형기선저인망 등 허가와 건수가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2009년 어선척수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안어업은 50,752척, 근해어업은 3047척으로 총 53,799명을 전체 어업인으로 산정하여 순응비용을 추정한다. 어업인 전체에 대한 순응비용 추정액은 다음의 <표 3-7>와 같이 시나리오 1의 경우 약 884억원이고, 시나리오 2의 경우 약 119억원으로 추정된다. 시나리오별로 금액상 차이는 시나리오 1의 경우 현재 어업허가의 만료기간이 정책도입을 통해 단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업인의 심리적 권리의 침해로 인하여 높은 순응비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시나리오 2의 경우에는 현재 어업허가 만료기간은 보장되기 때문에 제도 도입은 미래에 이루어질 사안이라 인식하고 있으며 권리의 침해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순응비용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어업인 전체에 대해 제도도입에 대한 순응비용의 추정액을 편차를 이용하여 최소와 최대 및 평균값을 나타내면 아래 표와 같이 추정된다. 그러나 본 분석에 있어 한계점으로는 예비조사를 통해 나타난 제시금액의 분포가 매우 크며 설문조사시 시간적·공간적 한계로 인하여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을 구별하여 조사를 하지 못하였으며, 각 해역별·어업별 특성을 고려한 설문설계가 곤란하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연근해어업은 어업별로 특색을 가지고 있으며, 어선의 규모, 어업수입, 종사인원 등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아래 분석결과인 제도도입의 순응비용 추정액의 최소금액과 최대금액 범위가 매우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7> 제도도입 순응비용 추정액 (단위: 만원)

	최 대	최 소	평 균
시나리오 1	11,925,624	5,754,879	8,839,176
시나리오 2	1,366,495	936,103	1,188,958

## 4) 비용-효과 비교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불법어업의 감소, 감척사업의 효율성 재고, 면세유 부정유출방지 등 어업관리의 효율화를 얻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업인 순응비용 등의 문제가 정책 수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외부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개별 어업인들 입장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어업허가에 대한 권리침해 등의 문제로 인하여 현재 제도를 선호할 수 있으나 이는 허가관리제도의 비효율화를 가지고 온다.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를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 다음의 <표 3-8>와 같이 불법어업감소를 통한 어획보전 효과는 연간 최소 39.6에서 198.2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수산자원의 미래가치보전효과는 연간 약 21억원에서 약 103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감척사업 효율성 제고효과는 약 30억원에서 45.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의 합계는 101.2억원에서 40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lt;표 3-8&gt; 제도도입의 비용-효과 비교 (단위: 억원)

		최 소	일 반	최 대	비 고
편익	불법어업감소	39.6	118.9	198.2	연간효과
	미래가치 보전효과 (미성어)	20.7	62.2	103.7	연간효과
	감척사업 효율성	30.3	39.4	45.5	총합효과
	면세유 부정유출방지	10.5	31.6	52.7	연간효과
효과합계		101.2	252.2	400.1	-
비용	시나리오1	883.9			총합비용
	시나리오2	118.9			

### 5) 타당성 분석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에 있어서 사회적 할인율의 설정과 제도도입에 대한 사업기간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할인율의 적정수준에 대한 견해는 예산제약이 강할 때(특히 긴축재정시)에는 높은 사회적 할인율 수준이 바람직하다고 일반적으로 주장한다. 이는 자원이 희소할수록 사람들은 미래에 발생할 편익들보다 현재 편익을 더 강하게 선호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할인율의 적정수준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존재한다. 본 분석의 경우는 제도도입에 대한 분석임을 고려할 때 적정 사회적 할인율의 선정은 수산부분에서 거의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분석에서는 일반 공공사업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할인율(Social Discount Rate)<sup>13)</sup> 7.5%를 가정하였다. 분석기간은 제도도입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영구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30년으로 설정하였다.

각 시나리오별 정책순응비용은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에서 모두 제도 도입초기에 발생하게 된다. 시나리오 2의 경우 제도는 5년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지만 결국 어업인의 입장에서는 단계적으로 어업허가의 만료이후 허가 갱신시 유효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시나리오 1과 동일하게 비용시기를 가정한다. 제도도입에 있어 현재 어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실시하는 시나리오 1의 경우 사업 타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9>와 같이 제도도입의 효과를 최소로 가정하였을 경우 NPV(Net Present Value: 순현재가치)<sup>14)</sup> 값이 -25.6억원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IRR

13) 사회적 할인율은 경제성 분석에서 각기 다른 시기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적용하는 할인율 내지 자본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말한다.

14) NPV(순현재가치)는 사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 중 하나로 사업 시작부터 종료까지 연도별 순편익 흐름을 각각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합계한다. 즉, NPV가 0보다 크면 사업가치가 있는 것으로 그리고 NPV가 0보다 작으면 사업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Internal Rate of Return: 내부수익률)도 7.2%로 분석에 사용된 사회적 할인율 7.5%보다 낮게 분석된다. 그러나 제도도입의 효과가 평균치로 발생함을 가정할 경우 약 1,655억원의 순현재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분석의 결과를 근거로 파악 시나리오 1에 대한 제도도입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제도도입의 효과를 최소로 가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3-9> 시나리오 1의 타당성분석 결과

	제도도입 효과 최소 가정시	제도도입 효과 일반 가정시	제도도입 효과 최대 가정시
NPV(억원)	-25.6	1,655	3,337
IRR	7.2%	24.4%	40.6%
사업타당성	타당않음	타당	타당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에 있어 현재 어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어업허가 유효기간을 보장하며 실시하는 시나리오 2의 경우 다음의 <표 3-10>와 같이 제도도입의 효과가 평균치로 발생함을 가정할 경우 약 1,551억원의 순현재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0> 시나리오 2의 타당성분석 결과

	제도도입 효과 최소 가정시	제도도입 효과 일반 가정시	제도도입 효과 최대 가정시
NPV(억원)	446	1,551	2,658
IRR <sup>15)</sup>	22.38%	37.30%	45.8%
사업타당성	타당	타당	타당

15) IRR(내부수익률)은 어떤 사업에 대해 사업기간동안 현금수익의 흐름을 현재가치



### Ⅲ.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분석결과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은 신규 연근해어업 진입해소, 유희어업 및 무조업선 예방, 불법어업 방지 등 및 허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방안의 하나이다. 제도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효과는 얼마나 될 것인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더불어 정책추진상의 사회적 비용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본 분석에서는 제도도입에 대한 각 효과를 설정하고 계량적인 추정을 하였으며, 비용은 어업인의 정책순응비용을 추정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제도도입의 효과추정에 있어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긍정적인 가정과 부정적인 가정 등 각 효과별로 3가지의 가정을 통하여 그 경제적 효과 금액을 추정하였다. 시나리오별 NPV의 도출결과를 보면 제도도입에 대한 효과를 최소로 가정할 경우 시나리오 2가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효과의 평균과 최대한으로 가정시 시나리오 1의 NPV 3,337억원으로 시나리오 2의 NPV 2,658억원과 비교할 때 타당성이 더 높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음의 <표 3-11>과 같이 제도도입에 있어서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미래에 발생할 효과의 규모가 커질수록 시나리오 1의 경우가 제도도입의 효과가 더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나리오 2의 제도도입에 대한 시간적 공백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감안할 경우 시나리오 1이 좀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제도도입의 시급성을 고려할 경우에는 시나리오 1의 현재 어업인의 어업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어업허가의 일제정비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

로 환산하여 합한 값이 투자지출과 같아지도록 할인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내부수익률과 자본비용을 비교하여 수익률이 높으면 투자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lt;표 3-11&gt; 시나리오별 NPV 비교

	제도도입 효과 최소 가정시	제도도입 효과 일반 가정시	제도도입 효과 최대 가정시
시나리오 1	-25.6	1,655	3,337
시나리오 2	446	1,551	2,658

## 3.

## 1) 조사개요

## (1) 조사설계

설문조사의 대상, 방법, 기간 및 표본추출, 유효표본, 자료분석, 조사 내용은 다음의 <표 3-12>와 같다.

&lt;표 3-12&gt; 조사설계

조사대상	현재 어업허가권을 소유한 전국의 어업경영주(선주) 200명				
조사방법	개별방문 1:1 면접조사				
조사기간	2010년 11월-2010년 12월				
표본추출	임의할당추출법				
유효표본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소 계
	배 포	57명	61명	82명	200명
	회 수	57명	61명	82명	200명
	회수율	100%	100%	10041%	100%
자료분석	SPSS(Statistics Package for Social Science) 활용				
조사내용 (설문항목)	조업현장의 문제점			문항1	
	조업현장의 불법행위 지속이유			문항2	

Ⅲ.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분석결과

	어업문제 해결방안	문항3
	실제 조업여부 판단근거	문항4
	어업허가기간의 적정여부	문항5
	어업허가기간의 개선방향	문항6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 필요성	문항7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 기대효과	문항8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수용의사	문항9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시기	문항10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업종별 실시	문항11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지역별 실시	문항12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정착방안	문항13

설문항목은 다음의 <표 3-13>과 같이 문항1~문항6까지 어업현황과 문제점을 그리고 문항7~문항13까지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순응도를 살펴보았다.<sup>16)</sup>

<표 3-13> 설문항목

일련번호	설문항목
문항1	선생님께서 조업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 중 어떤 것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2	선생님께서 조업현장에서 불법행위가 해소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3	선생님께서 불법어업이나 조업은 하지 않고 어선을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등 고질적인 어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4	선생님께서 실제로 조업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5	선생님께서 현재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5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6	현재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5년에 개선이 필요하다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적절한 허가의 유효기간은 몇 년입니까?

16) <부록 2> 참조

일련번호	설문항목
문항7	선생님께서서는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8	선생님께서서는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도입시 가장 큰 기대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9	선생님께서서는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가 도입된다면 수용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문항10	선생님께서서는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가 도입된다면 언제부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11	선생님께서서는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업종별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12	선생님께서서는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지역별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13	선생님께서서는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가 도입되어 정착되려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 응답자 특성

&lt;표 3-14&gt;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비율(%)
연령	40대 이하	44	22.0
	50대	94	47.0
	60대 이상	62	31.0
종사기간	10년 이하	32	16.0
	11~20년	78	39.0
	21~30년	56	28.0
	31년 이상	34	17.0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27	13.5
	100만원~200만원 미만	56	28.0
	200만원~300만원 미만	46	23.0
	300만원~500만원 미만	36	18.0
	500만원 이상	35	17.5

### Ⅲ.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분석결과

		사례수(명)	비율(%)
업종	연안어업	150	75.0
	구획어업	27	13.5
	근해어업	23	11.5
어업허가 잔여기간	1년 이하	33	16.5
	1년 이상~ 2년 미만	43	21.5
	2년 이상~ 3년 미만	61	30.5
	3년 이상~ 4년 미만	36	18.0
	4년 이상	27	13.5
어선크기	1t 이하	30	15.0
	1t 초과~ 2t 이하	42	21.0
	2t 초과~ 3t 이하	42	21.0
	3t 초과~ 4t 이하	28	14.0
	4t 초과~ 5t 이하	30	15.0
	5t 초과	28	14.0
불법어업	있음	60	30.0
	없음	140	70.0
행정처분	있음	28	14.0
	없음	172	86.0
지역	서해안	61	30.5
	남해안	82	41.0
	동해안	57	28.5

## 2) 어업의 실태분석

### (1) 조업현장의 문제점

조업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3-15>과 같이 ‘어업허가 없이 조업하는 경우’가 44.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허가받지 않은 다른 어선으로 조업하는 경우’ 37.0%, ‘어망크기 등 어법을 위반하여 조업하는 경우’ 36.5%, ‘조업금지 구역을 침범하여 조업하는 경우’ 35.5%, ‘조업금지 기간을 위반하여 조업하는 경우’ 33.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lt;표 3-15&gt; 조업현장의 문제점

	빈도(명)	비율(%)
<b>어업허가 없이 조업하는 경우</b>	<b>88</b>	<b>44.0</b>
허가받지 않은 다른 어선으로 조업하는 경우	74	37.0
어망크기 등 어구어법 위반하여 조업하는 경우	73	36.5
조업금지 구역을 침범하여 조업하는 경우	71	35.5
조업금지 기간을 위반하여 조업하는 경우	66	33.0
수산 동식물의 체장을 위반하여 조업하는 경우	28	14.0
소 계	200	100.0

## (2) 조업현장의 불법행위 지속이유

조업현장에서 불법행위가 해소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3-16>와 같이 ‘어획부진’이 42.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수산자원 보호의 의식부족’ 25.0%, ‘관리감독 및 단속소홀’ 16.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업현장에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획부진에 대한 대책마련 및 수산자원보호에 대한 인식제고가 선결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업종에 따른 응답특성을 보면 연안어업 46.7%, 구획어업 48.1%가 ‘어획부진’이 조업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근해어업 34.8%가 ‘수산자원 보호의 의식부족’과 30.4%가 ‘관리감독 및 단속소홀’로 밝혀져 업종별로 인식차이를 보이고 있다.<sup>17)</sup> 지역에 따른 응답특성을 보면 동해안 49.1%, 서해안 41.0%, 남해안 39.0%가 ‘어획부진’이 조업현장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밝혀졌고 동해안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sup>18)</sup>

17)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chi^2=19.500$ ,  $df=10$ ,  $p=0.034^*$

18)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chi^2=21.868$ ,  $df=10$ ,  $p=0.016^*$

Ⅲ.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분석결과

<표 3-16> 조업현장의 불법행위 지속이유

	빈도(명)	비율(%)
<b>어획부진</b>	<b>85</b>	<b>42.5</b>
수산자원 보호의 의식부족	50	25.0
관리감독 및 단속 소홀	33	16.5
과다한 투자로 상환부담 압박	17	8.5
범칙금 등 처벌부족	14	7.0
기타	1	0.5
소 계	200	100.0

(3) 어업문제의 해결방안

고질적인 어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17>와 같이 ‘어선 감척사업 대상의 엄격한 선별’이 40.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어업인의 의식개선 및 홍보강화’ 24.0%,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강화’ 16.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따라서 만성적인 어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어선 감척사업 대상의 엄격한 선별 및 투명한 절차를 통해 감척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업종에 따른 응답특성을 보면 연안어업 42.0%, 근해어업 43.5%가 ‘어선 감척사업 대상의 엄격한 선별’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구획어업 37.0%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강화’라고 인식하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sup>19)</sup>

<표 3-17> 어업문제의 해결방안

	빈도(명)	비율(%)
<b>어선 감척사업 대상의 엄격한 선별</b>	<b>81</b>	<b>40.5</b>
어업인의 의식개선 및 홍보강화	48	24.0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강화	32	16.0

19)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chi^2=21.962$ ,  $df=10$ ,  $p=0.015^*$

	빈도(명)	비율(%)
자율어업 활성화를 위한 조업활동 개선	24	12.0
법규정 위반시 범칙금 강화	10	5.0
기타	5	2.5
소 계	200	100.0

#### (4) 실제조업의 판단근거

실제 조업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18>과 같이 ‘출입항 신고기록’이 49.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수협 위판실적’ 33.5%, ‘면세유 구입실적’ 16.5% 등의 순서로 나타나 실제 조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출입항 신고기록’이 가장 객관적인 근거임을 볼 수 있다. 실제조업의 판단근거로서 업종별로 ‘출입항 신고기록’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연안어업 52.0%, 구획어업 48.1%, 근해어업 30.4%로 나타나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출입항 신고기록’을 가장 객관적인 판단근거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근해어업은 ‘수협 위판실적’ 52.2%라고 응답하여 다소간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sup>20)</sup>

불법어업의 경험에 따른 응답특성을 보면 불법어업의 경험이 없다 54.3%가 ‘출입항 신고기록’, 불법어업의 경험이 있다 50.0%가 ‘수협 위판실적’이라고 밝히고,<sup>21)</sup> 행정처분의 경험에 따른 응답특성을 보면 행정처분의 경험이 없다 51.7%가 ‘출입항 신고기록’, 행정처분의 경험이 있다 42.9%가 ‘수협 위판실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sup>22)</sup> 따라서 불법어업과 행정처분의 경험이 없는 대부분 응답자들은 ‘출입항 신고기록’을, 이에 비해 불법어업과 행정처분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수

20)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chi^2=16.670$ ,  $df=8$ ,  $p=0.034^*$

21)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chi^2=13.602$ ,  $df=4$ ,  $p=0.009^{**}$

22)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chi^2=9.524$ ,  $df=4$ ,  $p=0.049^*$



Ⅲ.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분석결과

협 위판실적'을 실제로 조업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라고 인식하고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역에 따른 응답특성을 보면 동해안 63.2%, 남해안 48.8%가 '출입항 신고기록'을 그리고 서해안 52.5%가 '수협 위판실적' 이라고 응답하여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sup>23)</sup>

<표 3-18> 실제조업의 판단근거

	빈도(명)	비율(%)
출입항 신고기록	98	49.0
수협 위판실적	67	33.5
면세유 구입실적	33	16.5
사매매 증명서	1	0.5
기타	1	0.5
소 계	200	100.0

(5) 어업허가기간의 적정성

현행 어업허가기간 5년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19> 과 같이 '적당하다'가 64.0%로 '개선이 필요하다' 36.0%보다 높게 나타나 어업허가기간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어업종사기간에 따른 응답특성을 보면 10년 이하 56.3%, 11년~20년 52.6%, 21년~30년 78.6%, 30년 이상 73.5%가 현행 어업허가기간 5년이 적당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어업종사기간이 20년 이하보다는 20년 이상에서 어업허가기간 5년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sup>24)</sup> 지역에 따른 응답특성을 보면 남해안 79.3%, 서해안 68.9%, 동해안 36.8%로 나타나 동해안 보다는 남해안과 서해안에서 어업허가기간 5년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

23)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chi^2=23.052$ ,  $df=8$ ,  $p=0.003^{**}$

24)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chi^2=11.762$ ,  $df=3$ ,  $p=0.008^{**}$

을 알 수 있다.<sup>25)</sup>

<표 3-19> 어업허가기간의 적정성

	빈도(명)	비율(%)
적당하다	128	64.0
개선이 필요하다	72	36.0
소 계	200	100.0

#### (6) 어업허가기간의 개선방향

현행 어업허가기간 5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36.0%에 대해 어업허가기간의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20>과 같이 ‘10년’이 8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체 응답자 평균은 10.2년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어업허가기간의 적정성 및 개선방향에 대한 응답을 종합해보면 어업허가기간 5년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개선되는 경우에도 최소한 어업허가기간 5년 이하보다는 5년 이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에 따른 응답특성을 보면 동해안 94.4%, 서해안 73.7%, 남해안 64.7%가 ‘10년’이라고 응답하여 동해안에서 어업허가기간의 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표 3-20> 어업허가기간의 개선방향

	빈도(명)	비율(%)
10년	59	81.9
10년 미만	7	9.7
10년 초과	6	8.3
소 계	72	100.0
평균	10.2(년)	

25)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chi^2=27.167$ ,  $df=2$ ,  $p=0.000^{**}$

Ⅲ.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분석결과

3)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순응도

(1)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 필요성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21>와 같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8.0%(매우 필요하다 28.5%+필요하다 49.5%)이고, ‘필요하지 않다’는 22.0%(별로 필요없다 15.5%+전혀 필요없다 6.5%)로 나타나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음을 볼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른 응답특성을 보면 100만원 미만 77.8%, 100만원~200만원 미만 67.9%, 200만원~300만원 미만 67.4%, 300만원~500만원 미만 94.4%, 500만원 이상 91.4%가 각각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필요하다)고 응답하여 3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일수록 제도 도입에 대해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sup>26)</sup> 보유어선의 크기에 따른 응답특성을 보면 1톤 이하 60.0%, 1톤~2톤 이하 61.9%, 2톤~3톤 이하 78.6%, 3톤~4톤 이하 85.7%, 4톤~5톤 이하 93.3%, 5톤 이상 96.4%가 각각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필요하다)고 응답하여<sup>27)</sup> 어선크기가 클수록 제도 도입에 대해 동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3-21>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 필요성

	빈도(명)	비율(%)	
매우 필요하다	57	28.5	78.0
필요하다	99	49.5	
별로 필요없다	31	15.5	22.0
전혀 필요없다	13	6.5	
소 계	200	100.0	

26)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F=3.168, p=0.015\*

27)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F=5.684, p=0.000\*\*

## (2)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 기대효과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3-22>과 같이 ‘허가절차의 간소화’가 27.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불법어업의 근절’ 26.5%, ‘장기간 방치된 어선 근절’ 24.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른 응답특성을 보면 동해안 36.8%, 남해안 29.3%가 ‘불법어업의 근절’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서해안 34.4%가 ‘장기간 방치된 어선 근절’이라고 밝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sup>28)</sup>

&lt;표 3-22&gt;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 기대효과

	빈도(명)	비율(%)
허가 절차의 간소화	54	27.0
불법 어업의 근절	53	26.5
장기간 방치된 어선 근절	48	24.0
어획고 증대	33	16.5
면세유 부정사용 방지	9	4.5
기타	3	1.5
소 계	200	100.0

## (3)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수용의사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시 수용의사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23>과 같이 ‘수용의사가 있다’는 의견이 76.5%(매우 그렇다 22.5%+그렇다 54.0%), ‘수용의사 없다’는 23.5%(그렇지 않다 15.5%+전혀 그렇지 않다 8.0%)로 나타나 제도 순응도는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업종에 따른 응답특성을 보면 ‘수용의사가 있다(매우 그렇다+그

28)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chi^2=23.788$ ,  $df=10$ ,  $p=0.008^{**}$

Ⅲ.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분석결과

렇다)가 연안어업 80.7%, 근해어업 73.9%, 구획어업 55.6%로 나타나<sup>29)</sup> 구획어업보다는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이 제도 순응도가 높음을 볼 수 있다. 보유어선의 크기에 따른 응답특성을 보면 ‘수용의사가 있다(매우 그렇다+그렇다)가 1톤 이하 70.0%, 1톤~2톤 이하 61.9%, 2톤~3톤 이하 78.6%, 3톤~4톤 이하 71.4%, 4톤~5톤 이하 96.7%, 5톤 이상 85.7%로 나타나<sup>30)</sup> 4톤 이하보다는 4톤 이상에서 제도 순응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23>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수용의사

	빈도(명)	비율(%)	
매우 그렇다	45	22.5	76.5
그렇다	108	54.0	
그렇지 않다	31	15.5	23.5
전혀 그렇지 않다	16	8.0	
소 계	200	100.0	

(4)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시기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시기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24>와 같이 ‘약 1년후(2012년 1월부터)’가 35.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약 2년후(2013년 1월부터)’ 22.0%, ‘약 3년후(2014년 1월부터)’ 19.0% 등의 순서로 나타나 제도의 도입시기는 2012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임을 볼 수 있다. 어업허가의 잔여기간에 따른 응답특성을 보면 어업허가 잔여기간 ‘1년 이하’는 약 1년~2년 후 54.6% [약 1년후 48.2%, 약 2년후6.1%], ‘1년 이상~2년 이하’는 약 1년~2년 후 55.8% [약 1년후 16.3%, 약 2년후 39.5%], ‘2년 이상~3

29)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F=4.726, p=0.010\*

30)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F=3.184, p=0.009\*\*

년 이하'는 약 1년~2년 후 57.4% [약 1년후 36.1%, 약 2년후 21.3%], '3년 이상~4년 이하'는 약 1년~2년 후 58.3% [약 1년후 33.3%, 약 2년후 25.0%], '4년 이상'는 약 1년~2년 후 63.0% [약 1년후 51.9%, 약 2년후 11.1%] 로 나타나<sup>31)</sup>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가 약 1년후(2012년 1월부터) 또는 약 2년후(2013년 1월부터) 실시되는 방안에 대해 어업허가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약 55.5% 이상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3-24>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시기

	빈도(명)	비율(%)
약 1년후 (2012년 1월부터)	71	35.5
약 2년후 (2013년 1월부터)	44	22.0
약 3년후 (2014년 1월부터)	38	19.0
약 5년후 (2016년 1월부터)	24	12.0
약 10년후 (2021년 1월부터)	23	11.5
소 계	200	100.0

#### (5)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업종별 실시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업종별 실시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25>과 같이 업종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 83.5%이고, '반대' 16.5%로 나타나 연안어업, 근해어업, 구획어업 등 업종별 실시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업종에 따른 응답특성을 보면 연안어업 86.0%, 근해어업 87.0%, 구획어업 66.7%가 '찬성'으로 나타나 구획어업보다는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에서 업종별 실시에 대해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보유어선의 크기에 따른 응답특성을 보면 1톤 이하 63.3%, 1톤~2톤 이하 83.3%, 2톤~3톤 이하

31)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chi^2=27.743$ ,  $df=16$ ,  $p=0.034^*$

Ⅲ.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분석결과

85.7%, 3톤~4톤 이하 85.7%, 4톤~5톤 이하 90.0%, 5톤 이상 92.9%가 ‘찬성’으로 밝혀져 어선크기가 클수록 업종별 실시를 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5>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업종별 실시

	빈도(명)	비율(%)
찬 성	167	83.5
반 대	33	16.5
소 계	200	100.0

(6)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지역별 실시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26>와 같이 ‘찬성’ 62.0%이고, ‘반대’ 38.0%로 나타나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등 지역별 실시에 대해 ‘반대’ 보다는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을 볼 수 있다.

<표 3-26>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지역별 실시

	빈도(명)	비율(%)
찬 성	124	62.0
반 대	76	38.0
소 계	200	100.0

(7)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정착방안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27>와 같이 ‘불법어업 단속 및 처벌강화’가 26.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조업구역별 허가정수 조정’ 19.0%, ‘어업별 조업구역 조정’

18.0%, 어업허가 종류를 통폐합 15.0%, 어업허가 우선순위 규정 조정 13.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정착 방안으로 ‘불법어업 단속 및 처벌강화’가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조정기능의 강화로 ‘조업구역별 허가정수 조정’, ‘어업별 조업구역 조정’, ‘어업허가 종류를 통폐합’, ‘어업허가 우선순위 규정 조정’ 등이 중요하다.

<표 3-27>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정착방안

	빈도(명)	비율(%)
<b>불법어업 단속 및 처벌강화</b>	<b>52</b>	<b>26.0</b>
조업구역별 허가정수 조정	38	19.0
어업별 조업구역 조정	36	18.0
어업허가 종류를 통폐합	30	15.0
어업허가 우선순위 규정 조정	27	13.5
어업분쟁 조정제도 도입	13	6.5
(부령에 의한) 어획보고의 성실	1	0.5
기타	3	1.5
소 계	200	100.0





## IV. 전자어업허가증의 타당성 분석

### 1. 가

현행 어업허가증은 다음의 <표 4-1>와 같이 지질형태로 발급하고 있어 지질형태의 생산활동이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의 특성에 때문에 바닷물과 습도, 곰팡이 및 염분에 의해 허가증이 쉽게 훼손되며, 연간 재발급 받는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표 4-1> 전자어업허가증의 비교

어업허가증(종이형태)	전자어업허가증(스마트카드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이형태로 인한 훼손 우려 높음</li> <li>-위조 및 변조의 위험성 높음</li> <li>-허가사항변경 및 주소변경 등에 따른 지속적 재발급 필요</li> <li>-발급비용 저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훼손방지 가능</li> <li>-지도·단속 등 검사 편리</li> <li>-위조 및 변조 방지가능</li> <li>-허가사항변경 및 주소변경 등에 따른 시스템상 수정 가능</li> <li>-통계자료 D/B화 및 시스템 연계가능</li> <li>-발급비용 상대적 고가</li> </ul>

어업허가증이 지질형태를 가지고 있음에 따라 어업허가증 상에 기재된 채취물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어종을 포함시켜 위법행위를 하는 등 허가증의 변조와 스캔기술, 복사기술 및 이미지 편집기술의 발달로 인한 어업허가증의 위조 등으로 인하여 일부해역에서 불법어

#### Ⅳ. 전자어업허가증의 타당성 분석

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재 지질형태의 어업허가증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어업질서의 확립 및 어업인의 효과증대를 위해 위·변조가 불가하고 훼손의 위험이 작으며 소지가 편리한 스마트 카드형태의 전자 어업허가증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어업허가증은 재질이 플라스틱으로 종이에 비하여 훼손 가능성이 낮으며 또한 카드 형태로 위조 및 변조가 어렵다. 그리고 메모리가 내장되어 있어 인증 단말기의 접촉을 통하여 어업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어 어업지도·단속시 검사의 효율화 및 입출항 신고의 효율화가 가능하며 어업허가사항의 변경 및 주소이전 등 신청사항의 변경에 있어 소프트웨어로 정보의 변경이 가능하여 변경에 따른 어업허가증의 재발급 필요가 없다. 이와 더불어 메모리의 정보와 인증단말기 및 서버를 이용한 통계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가 가능하며, 입출항신고 및 면세유 공급시스템, 조업현황, 수협 등 기존의 수산관련 시스템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시스템체계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2. 가

어업허가증의 발급 및 재발급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수산업법’과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고 있다. 어업허가증의 재발급은 어업허가증의 심각한 훼손, 어업허가증의 분실, 어업허가사항 변경,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발생하게 된다. 현행 종이형태의 어업허가증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은 크게 생산활동이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의 특성으로 인한 훼손가능성 높음, 복사기술의 발전 및 이미지 편집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위·변조 가능성 높음, 허가사항 변경시 지속적 재발급 필요, 재발급을 위한 행정비용 지속적 발생, 데이터베이스화 어려움 및 시스템화 되지 못함으로 인한

타시스템과의 연계가 부족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실제 어업허가증의 사용자인 어업인 29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어업인 약 65% 이상이 조업 시 어업허가증을 선박에 비치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전체 응답자의 약 90.1%인 265명이 재발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발급 사유는 어업허가증의 훼손이 42.3%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현재 종이형태의 어업허가증의 높은 훼손가능성이 재발급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카드형태의 전자어업허가증 도입시에는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비율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어업허가증의 도입에 대한 어업인의 인식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가 약 78%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전자어업허가증의 도입은 훼손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3. -

#### 1) 효과항목의 선정

현행 종이형태의 어업허가증을 전자어업허가증으로 교체할 경우 다음의 <표 4-2>와 같이 발생하는 효과항목의 크게 어업질서 확보 효과 및 행정적 효과, 어업인 효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업질서 확보 효과는 어업일제정비의 효과에 포함되므로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행정적 효과는 훼손 및 어업허가 변경, 주소지 이전 등으로 인한 어업허가증의 재발급 신청의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조치 시간감소 및 노동력의 절감 효과 및 스마트카드화 된 전자어업허가증의 도입을 통하여 입출항 및 면세유사용, 어획량 등을 시스템화 하여 연계가 될 경우 발생하는 어업통계 및 조업실태 등의 데이터베이스 효율적 구축효과 등이 발생한다. 어업인 효과는 어업허가증 재발급 수수

Ⅳ. 전자어업허가증의 타당성 분석

료 절감 및 재발급시 소요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의 절감효과, 훼손 및 분실 방지 어업인 만족효과 등이다.

<표 4-2> 전자어업허가증 도입의 효과 분류

	세부 항목	비 고
어업질서 확보효과	어업 허가증 위·조 불법어업 방지 효과	일제정비의 효과에 포함
	지도·단속시 효율성 효과	
행정적 효과	민원조치 시간감소 및 노동력 절감 효과	정성적 추정
	통계자료확보 및 조업실태 등 D/B	정성적 추정
어업인 효과	어업허가증 재발급 수수료 절감	정량적 추정, 이전지출에 포함
	재발급시 소요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절감효과	정량적 추정,
	훼손 및 분실방지 어업인 만족효과(소비자잉여)	정량적 추정 CVM 분석결과

2) 효과추정

(1) 민원처리시간의 감소효과

경제적 효과 중 민원처리 시간감소 효과는 전자어업허가증 도입에 따른 어업허가증 훼손빈도의 저감 및 어업허가 변경, 주소지 이전 등 허가사항의 변경의 전산상 변경가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업허가증 재발급 민원처리 시간 및 노동력의 감소효과이다. 민원처리 1건당 소요시간 및 전자어업허가증 도입, 민원처리 건수 추정량과 전자어업허가증 도입전 민원처리 건수, 시간당 민원업무 노동가격 등을 통해 산출해 낼 수 있다.

$$\text{민원처리 시간감소 효과}(E1) = T \times (L_B - L_A) \times P_L$$

- $T$  = 민원처리 건 당 소요시간(h)
- $L_B$  = 전자어업허가증 도입전 민원처리 건수(건)
- $L_A$  = 전자어업허가증 도입후 민원처리 건수(건)
- $P_L$  = 시간당 민원처리 노동가격(만원/h)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연간 민원처리 시간감소의 효과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계량적으로 추정해보면 다음의 <표 4-3>와 같이 훼손 90% 가정시 10,135만원, 훼손 80% 가정시 9,534만원으로 파악되었다.

<표 4-3> 민원처리 시간감소 효과(E1)

추정 요인	내 용	
민원처리 건당 소요시간( $T$ )	20분 <sup>32)</sup>	
도입 전 민원처리 건수( $L_B$ )	22,109건	
도입 후 민원처리 건수( $L_A$ )	(훼손 90% 가정시) 6,357건	(훼손 80% 가정시) 7,294건
시간당 노동가격( $P_L$ )	1.95만원/h	
연간 민원처리 시간감소 효과 경제적 가치	10,135만원	9,534만원

(2) 재발급시 소요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절감 효과

재발급 소요시간 기회비용 절감 효과는 재발급 소요시간 및 전자어업허가증 도입, 민원처리 건수 추정량과 전자어업허가증 도입전 민원처리 건수, 시간당 어업경영주 기회비용을 통하여 산출해 낼 수 있다.

32) 민원처리의 건당 소요시간은 순수 담당공무원의 민원 처리시간으로 신안군 면담 조사 내용을 참고로 20분으로 가정

IV. 전자어업허가증의 타당성 분석

$$\text{재발급 소요시간 기회비용 절감 효과}(E2) = T_N \times (L_B - L_A) \times O_L$$

$T_N$  = 재발급 소요시간(h)

$L_B$  = 전자어업허가증 도입전 민원처리 건수(건)

$L_A$  = 전자어업허가증 도입후 민원처리 건수(건)

$O_L$  = 시간당 어업인 기회비용(만원/h)

시간당 기회비용은 선행연구의 내용을 검토하여 소득의 1/3을 적용하였으며, 어업인의 연평균 소득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3,117.6 만원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시간당 기회비용을 산출하면 1시간당 어업인의 기회비용은 0.44만원으로 분석된다. 이를 통하여 재발급 소요시간 감소 기회비용 절감효과를 추정해보면 다음의 <표 4-4>와 같이 훼손 90% 가정시 29,300만원, 훼손 80% 가정시 27,56만원으로 추정되었다.

<표 4-4> 재발급 소요시간 기회비용 절감 효과(E2)

추정요인	내 용	
재발급 건당 소요시간( $T_N$ )	4.2시간	
도입전 민원처리 건수( $L_B$ )	22,109건	
도입후 민원처리 건수( $L_A$ )	(훼손 90% 가정시) 6,357건	(훼손 80% 가정시) 7,294건
시간당 기회비용( $O_L$ )	0.44만원	
재발급 소요시간 기회비용 절감 효과 추정액	29,300만원	27,562만원

(3) 어업인의 만족효과

어업인 만족효과의 추정은 어업인의 심리적 현상에 대한 가치로 본 분석에서는 이분양분형 CVM 분석을 이용하여 지불의사금액(WTP)을 추정하였다.<sup>33)</sup> 다음의 <표 4-5>와 같이 전자어업허가증에 대한 어업인의 선호에 지불의사금액을 구하기 위하여 음의 값을 제거하고 0부터 무한대까지의 누적확률면적에 대한 절단된 평균(Truncated Mean WTP)을 사용하여 어업인 1인당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평균값은 1,057.3만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최대값은 1,347만원, 최소값은 767.8만원으로 산출된다.

<표 4-5> 전자어업허가증 도입의 어업인 만족 효과 추정 (단위 : 만원)

	평균편차비율	최 대	최 소	평 균
값	27.3	1,347.2	767.8	1,057.3

(4) 전자어업허가증 도입의 경제적 효과

전자어업허가증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다음의 <표 4-6>와 같이 연간 민원처리 시간감소 효과가 약 10,135만원, 재발급 소요시간 기회비용 절감 효과 경제적 가치가 29,300만원, 전자어업허가증 도입에 어업인 만족 효과가 1,057.3만원으로 총 40,492만원으로 추정된다.

<표 4-6> 전자어업허가증 도입의 효과 경제적 가치 (단위 : 만원)

	효과의 경제적 금액	
	훼손 90% 가정	훼손 80% 가정
연간 민원처리 시간감소 효과 경제적 가치(E1)	10,135만원	9,534만원

33) <부록 5>, <부록 6> 참조

IV. 전자어업허가증의 타당성 분석

	효과의 경제적 금액	
	혜손 90% 가정	혜손 80% 가정
재발급 소요시간 기회비용 절감 효과 경제적 가치(E2)	29,300만원	27,562만원
전자어업허가증 도입에 어업인 만족 효과	1,057.3만원	
합 계	40,492만원	38,153만원

3) 비용추정

전자어업허가증을 도입하기 위한 주요 기자재는 다음의 <표 4-7>와 같이 스마트 카드 (어업허가증), 어업허가증 인증 단말기, 발급 서버 (OS 포함), 스마트카드 발급기(전사포함), 키발급시스템 등 초기투자비용과 운영비용이 필요하다. 비용은 하드웨어가 총 2,270,000만원, 소프트웨어가 20,000만원으로 총 247,000만원의 초기비용이 발생하며, 연간 운영수리비로 19,300만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4-7> 전자어업허가증의 비용추정 (단위 : 만원)

	구성내역	단 가	수 량	합 계
H/W	스마트 카드 (어업허가증)	10	54,000	54,000
	어업허가증 인증 단말기	300	1,000	30,000
	발급 서버 (OS 포함)	50,000	11	55,000
	스마트카드 발급기(전사포함)	30,000	11	33,000
	키발급시스템 (암호화 모듈 포함)	50,000	11	55,000
소 계				227,000
S/W	발급 시스템 S/W	150,000	1식	15,000
	기존시스템 연계	50,000	1식	5,000
소 계				20,000
합 계				247,000



## 4.

전자어업허가증의 경제적 타당성의 분석에서 사업의 내용연수는 인 증단말기 및 서버를 기준으로 10년으로 가정하였다. 발급서버 및 발 급기, 키발급시스템은 각 도청에 1대, 농림수산식품부 2대로 총 11대 를 가정하였으며, 사회적 할인율은 앞서 7.5%를 적용하여 분석을 실 시하였다. 경제적 타당성 판별을 위한 분석에는 전자어업허가증을 도 입하였을 경우 현행 종이형태의 어업허가증을 스마트카드 형태의 전 자어업허가증으로 교체함으로써 어업허가증의 훼손율이 미래에 감소 할 것을 고려하여 훼손 가능성이 80%~90%가 감소한다는 가정을 하였 다. 훼손율이 90%가 감소하는 가정 1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를 살 펴보면 다음의 <표 4-8>과 같다.

NPV가 24,030 만원으로 0보다 높으며, IRR도 10.7%로 일반적 사회 적 할인율보다 높아 경제적 타당성을 가지는 사업으로 분석된다. B/C ratio의 경우도 1.059로 분석되어 1보다 높은 값을 가져 경제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1.059란 값은 투자되는 비용에 대비하여 그 편익이 일 반 민간사업에 비하여 크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 본 전자어업허가증 의 도입이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정책사업임을 고려할 때 추진하는 것 이 경제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훼손율이 80%가 감소하는 가 정 2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NPV가 7,973만원, IRR이 8.6%로 분석되어 NPV가 0보다 높으며, IRR은 사회적 할인율 7.5%보 다 크게 나타나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된다. B/C ratio의 경우도 1.020로 분석되어 1보다 높은 값을 가져 경제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IV. 전자어업허가증의 타당성 분석

<표 4-8> 전자어업허가증의 도입 경제적 타당성 (단위: 만원)

	가정 1(훼손율 90% 감소)		가정 2(훼손율 80% 감소)	
	값	경제적 타당성	값	경제적 타당성
NPV	24,030	타당성 있음	7,973	타당성 있음
IRR	10.7%		8.6%	
B/C ratio	1.059		1.020	

위의 전자어업허가증 도입 경제성 분석에서 포함되지 않은 어업 허가증 위·변조 불법어업 방지 효과 및 지도·단속 시 효율성 제고 효과 등과 정성적인 효과인 통계자료확보 및 조업실태 등 D/B 구축 효과를 고려할 때는 경제적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행 종이형태의 어업허가증을 대체하여 전자어업허가증 도입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V. 결 론

일본의 시즈오카현(靜岡縣) 사례분석을 통해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실시하여 불법어업의 예방, 무조업 어선의 감소, 감척사업의 실효성 증대, 수산자원의 회복 등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시 예상되는 경제효과와 제도 순응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시나리오 1(어업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어업허가의 일제정비제도를 실시하는 방안)과 시나리오 2(어업허가 유효기간을 보장하여 어업허가의 일제정비제도를 실시하는 방안)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의 비용을 추정한 결과 시나리오 1은 884억원, 시나리오 2는 119억원으로 나타나 현재는 시나리오 2이 타당성이 높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의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므로 분석 편의상 30년으로 설정하여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의 NPV(순현재가치)를 추정한 결과 제도 도입의 효과를 일반 가정시 시나리오 1의 NPV 1,655억원, 시나리오 2의 NPV 1,551억원으로 추정되어 시나리오 1이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그리고 최대 가정시 시나리오 1의 NPV 3,337억원, 시나리오 2의 NPV 2,658억원으로 추정되어 시나리오 1이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나리오 1이 시나리오 2에 비해서 시간이 소요될수록 타당성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 즉, 어업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경제분석 결과를 설문조사와 비교해보면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시기’에 대해 응답자들은 제도 도입은 약 1년후(2012년 1월부터) 또는 약 2년후(2013년 1월부터) 실시되는 방안에 대해 어업허가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약 55.5% 이상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분석과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어업허가기간 5년에 대해

## V. 결 론

‘적당하다’가 64.0%로 ‘개선이 필요하다’ 36.0%보다 나타나 현행 어업 허가기간 5년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며, 업종별 실시에 대해 ‘찬성’ 83.5%이고, ‘반대’ 16.5%로 나타나 연안어업, 근해어업, 구획어업 등 업종별 실시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고 있음을 볼 때 제도 도입시 어업허가기간 5년과 업종별 실시를 고려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78.0%이고, ‘필요하지 않다’는 22.0%로 나타나 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제도 도입시 수용의사에 대해 ‘수용의사가 있다’는 의견이 76.5%, ‘수용의사 없다’는 23.5%로 나타나 제도 순응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이 경제 및 사회적 효용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시 가장 큰 기대효과에 대해 응답자들은 ‘허가절차의 간소화’ 27.0%를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하고 있음을 볼 때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가 허가관리 내지 허가행정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현행 어업허가증은 지질형태로 발급되어 훼손 및 분실, 위조 및 변조 등으로 허가관리의 효율성이 감소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허가관리의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소유하기 편리한 스마트 카드형태의 전자어업허가증의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전자어업허가증 도입에 따른 정량적 효과 및 정성적 효과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으며, 비용-효과분석을 통해 전자어업허가증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였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사업의 내용연수는 인증단말기 및 서버를 기준으로 10년에 대해 분석을 하였으며 주요 기자재인 발급서버 및 발급기, 키발급 시스템은 각 도청에 1대, 농림수산식품부 2대로 총 11대를 가정하였고 사회적 할인율은 7.5%를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자어업허가증의 도입에 따른 경제

성 분석의 결과를 보면 가정 1의 훼손율 90% 감소시 NPV가 24,030만원으로 0보다 높으며, IRR(내부수익률)도 10.7%로 일반적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아 타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 2의 훼손율이 80%가 감소하는 것을 가정하였을 경우 NPV가 7,973만원, IRR이 8.6%로 나타나 NPV가 0보다 높으며, IRR은 사회적 할인율 7.5% 크게 나타나 타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어업허가증 도입의 경제성 분석에서 포함되지 않은 어업허가증 위·변조 불법어업의 방지효과 및 지도·단속시 효율성 제고효과 그리고 정성적 효과인 통계자료 확보 및 조업실태 등 D/B 구축 효과를 고려할 때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와 전자어업허가증의 조속한 도입은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도입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효과는 더욱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

- 김선표·오순택,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행동 계획과 국내이행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1.
- 박성쾌, “불법어업 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한국수산경제학회지, 제8권 1호, 2001.
- 류정곤, “우리나라 수산업 여건과 자원관리 정책현황 및 문제점”, 수산자원 회복계획 심포지엄, 해양수산부, 2004.
- 류정곤·김대영·이정삼·김수진, “어업관리 수단 효과분석을 위한 생물경제모델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5.12.
-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2008 어업경영조사보고(요약)”, 2008.
- 신영태·김승, “연안어업의 관리제도 개선방향”, 『수산경영론집』 제 33권 1호, 한국수산경영학회, 2002.
- 이광남, “우리나라 어업지도·단속의 실효성 제고에 관한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2009.
- 이광남, “연근해어구의 체계적 관리방안 기초연구”, 해양수산부, 2007.9.
- 정도훈, “우리나라 沿近海 不法漁業 防止 시스템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수산경영학석사학위 청구논문, 2002.
- 차철표, “수산업법상 어업자원관리제도의 입법론적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8.
- 차철표·정순범, “불법어업의 단속에 관한 법리 고찰”, 『해사법연구』, 한국해사법학회, 1999.

참고문헌

표희동 · 최세힘, “우리나라 근해 어업의 잠재적 감척규모 분석에 관한 연구”, 『Ocean and Polar Research』, 2005.

< >

Alejandro Mejias, Jr., “Vessel monitoring sensor application in the Gulf of Mexico shrimp fishery”,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U.S. Department of Commerce, 2002.5

FAO, “Measuring and Assessing Capacity in Fisheries : Basic Concepts and Management Options”, FAO Fisheries Report, No. 433/1, Rome, 2004.

Niki Sporrang, “Put environment the heart of European fisheries policy”, WWF Manifesto for the review of the EU Common Fisheries Policy, 2002.

Zheng, Y. AND Y. Zhou, “Measures of the Fishing Capacity of Chinese Marine Fleets and Discission of the Methods”, Journal of Oceanography, Vol. 61, 2005.

< >

농림수산식품부 : <http://www.maf.go.kr/main.t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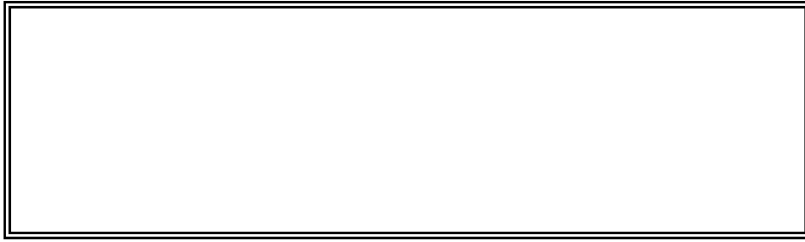
동해어업지도사무소 : <http://eastship.mifaff.go.kr/main.tdf>

서해어업지도사무소 : <http://westship.mifaff.go.kr/main.tdf>

해양경찰청 : [http://www.kcg.go.kr/main\\_page/main.asp](http://www.kcg.go.kr/main_page/main.asp)

어업생산통계시스템 : <http://fs.fips.go.kr>

통계청 : <http://kosis.kr>





<부록 1>

## 2003년(平成15년)도의 지사허가어업일제정비의 허가 등에 관한 취급방침

### 1. 기본방침

어업법(이하 「법」이라함) 제66조 제1항 및 시즈오카현어업조정규칙(이하 「규칙」이라함) 제6조에 의한 지사허가어업에 관계되는 2003년도의 일제정비 및 이후의 허가 등에 관한 취급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방침에 위하는 것으로 한다.

#### (1) 허가어업 및 그 종류

법 제66조 제1항 및 규칙제6조제1항 제1호부터 제17호까지 정한 어업에 대해서는 어업별의 허가 등의 취급방침에서 밝힌 어업종류로 분류한다. 역시 법 제66조제1항 및 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의2에 정하는 어업에 대하여는 당해어업마다 및 당해어업에 사용하는 선박마다의 제7조에서 제17조에 정하는 어업에 대하여는 당해어업마다의 허가로 한다.

#### (2) 조업구역 및 조업기간

대체적으로 일제정비전의 취급과 동일하게 하나 어업에 따라서는 어업조정상 또는 자원보호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서 조정을 도모한다.

#### (3) 허가 및 기업의 인가를 해야할 수(정수)

규칙 제25조에 근거하여 정수를 정해야할 필요가 있는 어업은 원칙적으로 일제정비 직전의 허가수 또는 기업의 인가수를 가지고 정하는 것으로 하지만 어업에 따라서는 어업의 조정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한다.

#### (4) 사용선박 및 어구의 규모의 제한

어획강도의 증대 및 과대경쟁 혹은 타어업과의 경합 등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어업에 대해서는 종래와 같은 사용선박 또는 어구에 대하여는 일부 제한하는 것으로 한다.

#### (5) 단기허가 등에 대하여

1소형기선저인망어업 수조(手繰)제3종(조개형망어업)에 대하여는 어획대상물이 공동어업권어업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그 발생상황이 그해에 따라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것을 고려하여 본어업의 허가는 단기허가

(대략조업기간) 취급으로 한다. 2현외어업자에 대한 허가에 대하여는 연합해구어업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허가하는 것으로 한다.

(6) 겸업허가에 대하여

당해어업마다 및 당해선박마다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어업으로서 겸업으로서 허가되는 어업에 대하여는 주어업에 관계되는 허가선박에 대해서만 겸업허가를 한다. 또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근거하여 허가 또는 기업의 인가에 있어서는 겸업하는 허가어업은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7) 규칙 제16조 및 제27조와의 동시적용

어업마다 및 선박마다의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선박을 당해어업에 사용하는 것을 폐지하여 또는 허가선박이 멸실하고 혹은 친몰한 때문에 타선박을 당해어업허가의 허가 또는 기업의 인가를 신청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신청의 내용이 종전의 허가를 받은 내용과 동일하지 않을 때 당해신청의 당해종전의 허가를 받은 내용이 당해 종전의 허가를 받은 내용을 규칙 제16조의 규정과 제27조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하여 허가 또는 기업의 인가를 하는 것으로 한다.

<부록 2>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현대리서치연구소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의뢰로 현행 어업허가제도와 관련하여 어업허가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와 관련된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에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평소 선생님의 소신이나 설문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은 우리나라 허가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와 우리나라의 어업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설문은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선생님의 의견은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된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연구주관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센터  
 윤광진 부연구위원: 02-3498-8774, 010-2291-6614  
 조사대행기관 : (주)현대리서치연구소

---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립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설문 응답요령	<p>▶ 객관식 문항의 경우 보기문항에서 해당되는 번호를 골라 오른쪽 응답란에 번호를 적어주시거나 응답란이 별도로 없는 경우 보기문항에 ○, √표 해주시면 됩니다.</p> <p>▶ 주관식 문항의 경우 □칸에 직접 내용을 기입해주시면 됩니다.</p>
---------	--

**A. 어업의 현황과 문제점**

문1. 선생님께서는 조업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 중 어떤 것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보기 중에서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

- 1) 어업허가도 없이 조업하는 경우
- 2) 허가받은 어선이 아닌 다른 어선으로 조업하는 경우
- 3) 어망크기 등 어구어법을 위반하여 조업하는 경우
- 4) 조업 금지구역을 침범하여 조업하는 경우
- 5) 조업 금지기간을 위반하여 조업하는 경우
- 6) 수산 동물과 식물의 체장을 위반하여 조업하는 경우

문2. 선생님께서는 조업현장에서 불법행위가 해소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1) 수산자원보호의 의식부족
- 2) 범칙금 등 처벌 부족
- 3) 어획 부진
- 4) 관리감독 및 단속 소홀
- 5) 과도한 투자로 상환부담 압박
- 6) 기타(\_\_\_\_\_)

문3. 선생님께서는 불법어업이나 조업은 하지 않고 어선을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등 고질적인 어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1) 어선감척사업 대상의 엄격한 선별
- 2)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강화
- 3) 어업인의 의식개선 및 홍보강화
- 4) 법규정 위반시 범칙금 강화
- 5) 자율어업 활성화를 위한 조업활동개선
- 6) 기타(\_\_\_\_\_)

문4. 선생님께서는 실제로 조업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수협 위판실적
- 2) 출입항 신고기록
- 3) 면세유 구입실적
- 4) 매매매 증명서
- 5) 기타( )

문5. 선생님께서는 현재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5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적당하다
- 2) 개선이 필요하다(문5-1로)

문5-1. 개선이 필요하다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적절한 허가의 유효기간은 몇 년 입니까?

약  년

### B.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란?

현재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허가가간 만료시 마다 새로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수산업법 제41조).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는 어업경영주(선주)의 남아있는 허가기간에 관계없이 정부가 공고한 날(예, 2011년 12월 31일)이 허가기간의 종료일(예, 2011년 12월 31일)이 되도록 허가기간 종료일을 일치하게 하고, 새로운 5년의 어업허가를 허가절차에 따라 일제히 발급하여 다음 허가기간 종료일(예, 2016년 12월 31일)이 되도록 허가의 유효기간을 통일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으로 수산자원의 적정량에 맞게 허가정수를 유지할 수 있으며 허가의 신규진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허가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문6. 선생님께서는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필요하다 2) 필요하다 3) 별로 필요없다 4) 전혀 필요없다

문7. 선생님께서는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도입시 가장 큰 기대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장기간 방치된 어선 근절                      2) 어획고 증대  
3) 불법어업의 근절                                4) 허가절차의 간소화  
5) 면세유 부정사용 방지                        6) 기타(\_\_\_\_\_)

문8. 선생님께서는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가 도입된다면 수용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문9. 선생님께서는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가 도입된다면 언제부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약 1년후(2012년 1월부터)                      2) 약 2년후(2013년 1월부터)  
3) 약 3년후(2014년 1월부터)                      4) 약 5년후(2016년 1월부터)  
5) 약 10년후(2021년 1월부터)

문10. 선생님께서는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적용범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1	반대 2
---------	---------

1) 업종별로 구분하여 실시

2) 지역별로 구분하여 실시

문11. 선생님께서는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가 도입되어 정착되려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조업구역별 허가정수 조정
- 2) 어업허가 우선순위 규정 조정
- 3) 불법어업의 단속 및 처벌강화
- 4) 어업별 조업구역 조정
- 5) 어업분쟁조정제도 도입
- 6) 어업허가의 종류를 통폐합
- 7) (부령에 의한) 어획보고의 성실
- 8) 기타(\_\_\_\_\_)

■ 이제 본 설문은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처리를 위한 문항 몇 가지만 더 여쭙고 설문을 마치겠습니다.

DQ1. 선생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1) 남성
- 2) 여성

DQ2. 선생님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세

DQ3. 선생님께서 어업경영주(선주)가 되고나서부터 현재까지의

어업종사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약  년

정확한 년 수가 기억나지 않으시면 대략적으로라도 응답해 주십시오

DQ4. 선생님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 1) 100만원 미만
- 2) 100만원~200만원 미만
- 3) 200만원~300만원 미만
- 4) 300만원~400만원 미만
- 5) 400만원~500만원 미만
- 6) 500만원 이상

DQ5. 선생님의 해당 업종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하실 경우 주력업종 한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1) 연안어업
- 2) 구획어업
- 3) 근해어업

DQ6. 선생님의 어업허가 만료일은 언제입니까?

년 월

DQ7. 선생님께서 보유하신 어선의 톤 수는 몇 톤입니까?

약  톤

DQ8. 선생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업현장에서는 여러 형태로 불법어업이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혹시라도 무허가조업, 어구위반, 조업구역위반, 조업금지기간 및 구역위반, 금어기위반 등을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1) 없음
- 2) 1~2회
- 3) 3~5회
- 4) 5~10회
- 5) 10회 이상



DQ9. 선생님께서는 최근 1년간(2010년 1월 ~ 2010년 12월) 행정처분(경고, 정지, 취소)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 1) 없음                      2) 1회                      3) 2회  
4) 3회                      5) 4회 이상

면접원은 설문종료 후 아래사항을 작성하십시오.		
지역 정보	1) 서해안              2) 남해안              3) 동해안	
	1) 서해중부(경기·충청)    2) 서해남부(변산이남)    3) 남해전라 4) 남해경상    5) 동해강원    6) 동해경상	
면접원 정보	면접원 :	
	면접일시 : 2010년 ( )월 ( )일 ( )시 ( )분부터 ( )분간	
	검증원 :	검증 항목 :

<부록 3>

제도도입의 순응비용 조사설계

구 분	내 용
모집단	정책대상집단 - 어업허가권자('09년 기준 어업경영주 69,379명)
조사 방법	회수율제고 및 조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개별면접조사 CVM 조사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된 설문지 및 설명자료 이용 미리 교육된 전문면접원의 개별 면접조사 시에는 어업허가권자인 지 질문 한 후, 비 허가권자는 설문 대상에서 제외 예비조사 : 개방형 비용질문(직접질문법) 본 조 사 : 양분선택형 비용질문
조사 내용	어업허가제도 인식도 조사 - 어업허가제도 인식 - 현행 어업허가제도 효율성 인식 - 어업허가 만료 경험 - 어업허가 만료 기간 -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효율성 인식 -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도입 정책순응비용 산정 - 이중양분선택형 질문법 사용 - 시나리오 1, 2 구분 실시 - 인구 통계학적 내용 - 성별, 연령, 조업지역, 소득수준, 학력
유효 표본	총 설문지 350부 배포 (모집단의 대비 0.5%) 유효한 표본 294개 회수 (회수율 84%)
조사 기간	예비조사 : 어업허가 일제정비의 심리적 순응 비용액 기준 산출을 위한 설문조사 (64명 대상), - 2010년 7월 21일 ~ 2010년 7월 24일(3일간) 본조사 : 어업허가 일제정비의 심리적 순응 비용액 산출을 위한 설문조사 (350명 대상), - 2010년 8월 9일 ~ 2010년 8월 25일(15일간)

<부록 4>

제도도입의 순응비용 설문지

NO		
----	--	--

**어업허가 일제정비 순응비용 산출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자 하는 목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수산경영학회에 의해 시행되는 것입니다. 옳은 답이나 틀린 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진지하게 충분히 생각하신 후 자신의 의견을 대답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서슴지 말고 말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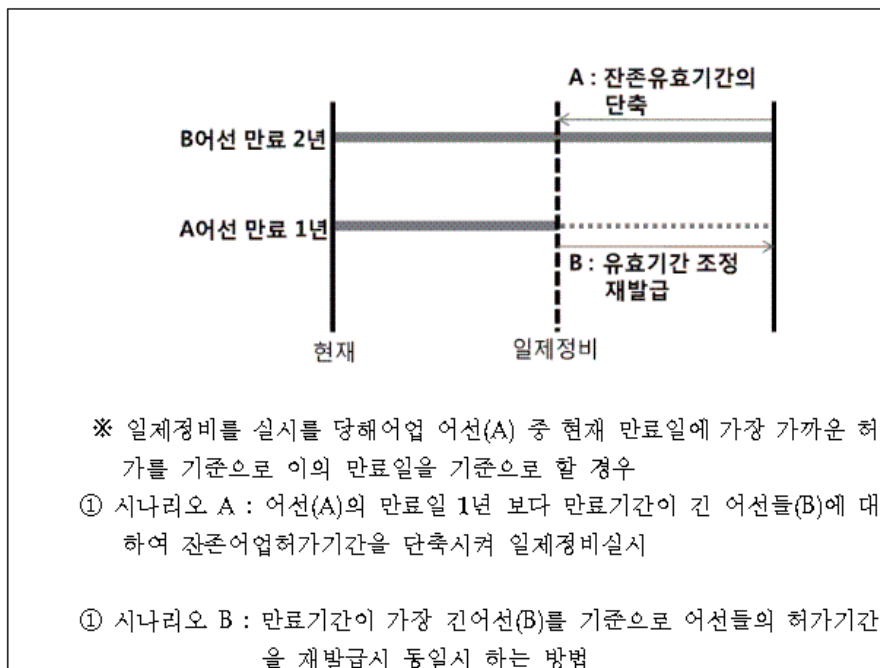
귀하의 고견은 불법어업의 방지 및 어업구조조정사업의 실효성 확보 등 어업 허가제도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조사의 결과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오니, 번거롭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귀하의 고견을 꼭 반영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본 설문은 어업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경영주만을 대상으로 하오니 해당되지 않으신 분은 설문지를 되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 어업허가제도 인식도 조사

- A1. 귀하는 어업허가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① 많이 알고 있다    ② 조금 알고 있다    ③ 모른다
- A2. 귀하 현재어업허가제도에 대하여 얼마나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효율적    ② 효율적    ③ 보통    ④ 효율적이지 못함    ⑤ 매우 효율적이지 못함
- A3. 귀하께서는 어업허가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새로운 허가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 \_\_\_\_\_회)    ② 없다
- A4. 현재 어업허가의 만료까지 남은 기간은 얼마입니까?  
 ( \_\_\_\_\_년)
- A5. 어업허가제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어업허가일제 정비를 실시를 한다면 동 정책에 대해 귀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① 매우 효율적    ② 효율적    ③ 보통    ④ 효율적이지 못함    ⑤ 매우 효율적이지 못함

### B. 어업허가제도 정책 순응비용



<시나리오 A>

- B1. 귀하의 어업허가제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어업허가일제 준비를 실시한다면, 정책의 순응을 위해 보상금이 \_\_\_\_\_만 원 정도라면 기꺼이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만약 귀하가 동 정책을 순응하지 못한다면 어업허가제도는 개선되지 못합니다.
- ① 있다      ☞ B3로 가십시오.  
 ② 없다      ☞ B2로 가십시오.

(앞 질문의 제시금액의 2배 제시)

- B2. 그렇다면 앞의 금액보다 높은 \_\_\_\_\_만 원 정도라면 기꺼이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앞 질문의 제시금액의 1/2배 제시)

- B3. 그렇다면 앞의 금액보다 낮은 \_\_\_\_\_만 원 정도라도 기꺼이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B4. 그렇다면 귀하가 어업허가일제 준비를 실시한다면, 정책의 순응을 위해 얻어야할 보상금의 최소 금액은 얼마입니까?

원
---

- B5. 그렇다면 귀하가 어업허가일제 준비를 실시한다면, 정책의 순응을 위해 얻어야할 보상금의 최대 금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원
---

<시나리오 B>

- B6. 귀하의 어업허가제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어업허가일제 준비를 실시한다면, 정책의 순응을 위해 보상금이 \_\_\_\_\_만 원 정도라면 기꺼이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만약 귀하가 동 정책을 순응하지 못한다면 어업허가제도는 개선되지 못합니다.
- ① 있다      ☞ B8로 가십시오.  
 ② 없다      ☞ B7로 가십시오.

(앞 질문의 제시금액의 2배 제시)

- B7. 그렇다면 앞의 금액보다 높은 \_\_\_\_\_만 원 정도라면 기꺼이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부록 5>

전자어업허가증의 조사설계

구 분	내 용
모집단	정책대상집단 - 어업허가권자 2009년 기준 어업경영주 69,379명
조사 방법	회수율제고 및 조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개별면접조사 CVM 조사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된 설문지 및 설명자료 이용 방문 면접조사 - 미리 교육된 전문면접원의 개별 면접조사 시에는 어업허가권자 인지 질문 한 후, 비 허가권자는 설문 대상에서 제외 예비조사 : 개방형 비용질문(직접질문법) 본 조 사 : 양분선택형 비용질문
조사 내용	조업시 어업허가증 소지실태 어업허가증 재발급 실태 - 어업허가증 재발급 경험 - 어업허가증 재발급 이유 - 어업허가증 신청 방법 - 어업허가증 사용시간 - 어업허가증 재발급 시 소모시간 등 전자어업허가증 도입 필요성 인식 전자어업허가증 도입 효과 인식 전자어업허가증 도입에 대한 지불금액 산정 - 이중양분선택형 질문법 사용
유효 표본	총 설문지 350부 배포 (모집단의 대비 0.5%) 유효한 표본 294개 회수 (회수율 84%)
조사 기간	예비조사 : 전자어업허가증 지불금액 기준산정을 위한 설문조사 (64명) - 개방형 질문법 사용 - 2010년 7월 21일 ~ 2010년 7월 24일(3일간) 본조사 : 전자어업허가증 도입 지불금액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294명) - 이중양분선택형 질문법 및 개방형 질문법 사용 - 2010년 8월 9일 ~ 2010년 8월 25일(15일간)

<부록 6>

## 전자어업허가증의 설문지

### 전자어업허가증 도입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전자어업허가증 도입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자 하는 목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수산경영학회에 의해 시행되는 것입니다. 옳은 답이나 틀린 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진지하게 충분히 생각하신 후 자신의 의견을 대담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서슴지 말고 말씀해 주십시오.

귀하의 고견은 어업 허가제도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조사의 결과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오니, 번거롭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어 귀하의 고견을 꼭 반영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책임자 연구위원 박광호 : 02-589-4603

담당연구원 정진호 : 016-633-2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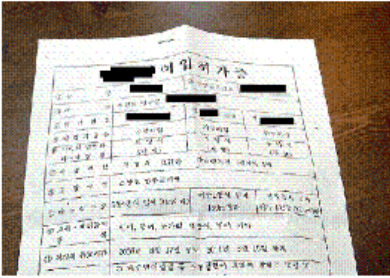

※ 본 설문은 어업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경영주만을 대상으로 하오니 해당되지 않으신 분은 설문지를 되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 어업허가증 관련 현황

- A1. 귀하는 어업허가증을 조업시 항상 선박에 비치 하고 계십니까?  
 ① 항상 선박 비치    ② 선박 비치 않함    ③ 비치 않을때도 있음
- A2. 귀하는 어업허가증의 재교부를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_\_\_\_\_회)    ② 없다
- A3. 어업허가증 재교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훼손    ② 분실    ③ 허가사항 변경    ④ 주소 등 변경  
 ⑤ 기타
- A4. 어업허가증 재교부의 신청 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방문신청    ② 민원우편    ③ 온라인신청    ④ 기타  
 (\_\_\_\_\_년)
- A5. 어업허가증 재교부시 소모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발급시간 및 행정군청 왕복 소요시간 등 포함)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3시간    ③ 3시간~5시간    ④ 5시간~7시간    ⑤ 7시간 이상

### B. 전자어업 허가증 도입

현재 종이형태 어업허가증	전자어업허가증 (스마트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이형태로 인한 훼손 우려 높음</li> <li>- 위조 및 변조의 위험성 높음</li> <li>- 허가사항변경 및 주소변경 등에 따른 지속적 재교부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훼손방지 가능</li> <li>- 지도·단속 등 검사 편리</li> <li>- 위조 및 변조 방지가능</li> <li>- 허가사항변경 및 주소변경 등에 따른 시스템 상 수정 가능</li> </ul>

B1. 전자어업허가증 도입에 필요성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    ② 필요    ③ 보통    ④ 필요 없음    ⑤ 매우 필요 없음

B2. 전자어업허가증의 어떠한 부분에서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훼손 방지로 인한 시간절약  
② 조업시 지도·단속의 편리  
③ 허가사항변경 및 주소변경 등 편리  
④ 불법어업 근절  
⑤ 기타(\_\_\_\_\_)

B3. 귀하는 만약 전자어업허가증의 구매가격이 \_\_\_\_\_원 정도라면 기꺼이 구매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있다        ☞ B4로 가십시오.  
② 없다        ☞ B5로 가십시오.

(앞 질문의 제시금액의 2배 제시)

B4. 그렇다면 앞의 구매가격 보다 높은 \_\_\_\_\_원 정도라면 기꺼이 구매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앞 질문의 제시금액의 1/2배 제시)

B5. 그렇다면 앞의 금액보다 낮은 \_\_\_\_\_원 정도라면 기꺼이 구매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B6. 그렇다면 귀하는 전자어업허가증의 구매금액은 얼마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원 ~ \_\_\_\_\_원 정도

㉟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㉟

본 설문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뒷면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